



2024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CONTENTS

제1장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제1절	개요	7
	1. 국민연금 제도란	7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7
제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10
	1. 사업장 신규적용	10
	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10
	3. 사업장 탈퇴	11
	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12
	5.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12
	6.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13
	7.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15
	8.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16
	9.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7
	10.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19
	11. 기준소득월액 결정	20
	12. 일용근로자	32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38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38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39
제4절	징수관리	44
	1. 의의	44
	2. 연금보험료	44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45
4. 연금보험료 미납 시	47
5. 과오납금 반환청구	47
6. 추후납부제도 안내	49

제5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0

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0

1. 지원대상	50
2. 지원금액 및 방법	54
3. 지원 및 제외신청	55
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57

나.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9

1. 지원대상 및 방법	59
2. 지원 및 제외신청	60
3. 타 지원 제도와와의 관계	61

다. 실업크레딧 제도 62

1. 개요	62
2. 제도 안내	62

제6절 증명서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63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63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65
3.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66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66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67



CONTENTS

제7절	신고편의제도	68
	1. EDI 서비스	68
	2.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75
	3. 4대 사회보험 QR신고와 OCR 인식시스템	78

제2장

국민연금 혜택

제1절	급여의 종류	84
	1. 개요	84
	2. 연금급여의 특징	84
	3. 국민연금 수급자	85
	4. 노령연금	85
	5. 장애연금	86
	6. 유족연금	88
	7. 반환일시금	89
	8. 사망일시금	89
제2절	연금급여액	90
	1. 연금급여액의 구성	90
	2. 연금급여액 수준	90
	3. 급여종류별 급여액	92



제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95
	1. 수급기간	95
	2. 수급일	95
	3. 수급방법	95
제7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96
	1. 국민연금 급여 간 중복급여의 조정	96
	2.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급여의 조정	96

제3장

부록

부록1	권리구제 제도	98
부록2	국민연금법령	100
부록3	서식 자료	124
부록4	예상연금월액표	148
부록5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소개	153
부록6	지사 주소 및 전화 팩스번호	154



제1장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제4절 징수관리

제5절 보험료 지원제도

제6절 제증명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제7절 신고편의제도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안내



4대보험 공통신고

입사(취득)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 가능

-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2)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취득·상실 4대보험 공통신고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공통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공통신고 대상 : 취득 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 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1)시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 2024.1.25 입사 후 미희망시 2024. 2월분부터 부과
상실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 ⇒ 2024.1.5. 퇴사한 경우, 1.6 상실 및 1월분까지 부과 ● 초일 취득당월 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건강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불필요
	고용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 착오신고 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요망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 해야 하며, 신고를 잘못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1) 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 신고대상 : 착오 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 신고

-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이 불가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휴직발령서 등)
- 납부예외 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 신고

- 신고대상 : 납부예외 기간 경과 후 복직한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재개일 : 복직일



납부예외(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

납부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 다만, 기타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계 등 증빙자료 제출 ● 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일, 우선지원비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납부예외신청 가능
예외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예외 기간 경과 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경과 후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고 후 상실 신고
납부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 ● 취득 시 소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기재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됩니다.

1)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 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됨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24.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24.7.1. (매년 7.1. 조정)
-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 37만원



2024년 소득총액 신고 안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개인사업자 제외)

적용 기간	● 해당연도(2024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2024.7. ~ 2025.6)
계산 방법	● (2023년)전년도 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 가입일수) × 30
업무 일정	5월 ●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6월 ●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6월 경*) 및 정정신청 (* 참고용으로, 정확한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7월 ● 연금보험료 고지(납부기한일: 8월 10일)
적용 예시	● 2023.12.1. 입사(복직) : 2023.12~2024.6, 2024.7 ~ 2025.6 ● 2023.12.2. 입사(복직) : 2023.12~2025.6



4대 사회보험 기관별 연락처

기 관 명	전화/ 홈페이지/ EDI		해당업무
국민연금공단	안내전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관련 업무
	홈페이지	www.nps.or.kr	
	EDI	edi.nps.or.kr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전화	1577-1000(유료)	건강보험관련 업무
	홈페이지	www.nhic.or.kr	
	홈페이지	si4n.nhis.or.kr	4대 보험 보험료 징수관련업무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등
	EDI	edi.nhis.or.kr	4대 보험 자격신고 및 건강보험 고유업무
근로복지공단	안내전화	1588-0075(유료)	고용보험관련 업무
	홈페이지	www.comwel.or.kr	산재· 고용보험관련 업무
	홈페이지	total.comwel.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고용· 산재 고유업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안내전화	063-711-7800(유료)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업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www.4insure.or.kr	
사회보험 EDI	안내전화	080-318-5306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등
	홈페이지	bips.bizmeka.com	

제1절

개요



1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증별

가. 용어정의

용어	내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 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함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임원 포함)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사업소득금액)
기준소득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특수직종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갠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나. 가입자 종별

구분	18세 ~ 59세 전 국민
당연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예외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
적용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 학생, 타 공적연금 가입자 등
임의(계속)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제외자 또는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희망에 의하여 가입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고와 납부를 사업장 사용자(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 우선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그에 속한 가입자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 국민연금 사업장 관련 신고는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

신고사유	신고서식	비고 및 유의사항
사업장 신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사업장 내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 등 변경 시 제출
사업장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탈퇴신고서 	휴·폐업, 최종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근로자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함)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 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도 같이 제출
근로자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상실신고서 	최종 근로자 퇴사 시 사업장 탈퇴 신고도 같이 함
무보수 휴직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예외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대상임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설현장사업장 용)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서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가급적 EDI로 신고 	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장 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 간 분리전출입 안됨
사업장 분리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지점 성립)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본·지점 간 이동하는 근로자) ※ 기 성립된 사업장 간 분리적용은 분리적용신청서 제출 	신규로 분리 적용하는 경우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의 분리적용사업장의 해당여부에 체크

- 기타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355(유료)
-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전자민원] - [서식찾기] - [서식자료]

제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1

사업장 신규적용

가.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나. 사업장 적용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다.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라. 신고서류

-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마.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2)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가. 변경대상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사업장
 -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 내용변경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 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해야 함

나.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필요 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

3

사업장 탈퇴

가. 탈퇴대상

-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2)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3)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나. 사업장 탈퇴일

- ◆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
 -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다.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3)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라. 사업장 탈퇴신고 시 유의사항

-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탈퇴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2)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해야 함
- (3) 통·폐합 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신설)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자격취득부호 “9”)

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1) 본점 사업장을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
 - (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

5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 (1) **(제도 개요)** 전문성을 갖춘 기관[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전문분야:인적자원관리), 행정사(일반행정사)]이 웹EDI로 위탁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처리 편의 제고 (2014. 10. 1 시행)
- (2) **(신청대상 사업장)** 업무대행기관에 신고(신청)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
- (3) **(업무대행 범위)**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등 업무
 - ➔ 세부 업무처리 기준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6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 신고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 가능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자

(3)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하는 자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4)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

* <소득있는 업무 종사> 월 2,861,091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2023년 기준, 사업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나. 근로자의 개념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 대학 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2016.1.1. 시행)

다. 자격취득시기

- (1)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당연적용사업장) 된 때
- (2)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3) 단시간 근로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4)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된 때 또는 1개월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 된 때
- (5)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 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6)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이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 된 때

* 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확인 시 자격 취득

라. 제출서류

-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2)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특수직종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 광원 : 상시 갱내종사 직종과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공신력 있는 입증자료
 - 부원 : 선원수첩사본 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대상

- (1)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등
 -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변경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
- (2)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기준소득월액 등
 - ※ 내용정정 신고는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변경은 정정대상이 아님에 유의

●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취소 신고 방법 변경 (2022.7.1.이후)

- 기존 내용변경으로 신고되던 취득취소, 상실취소는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로 변경

변동사유	신고방법
취득취소(최종자격)	상실신고서 (상실사유 26.취득취소)
상실취소	취득신고서 (취득사유 15.상실취소)

나.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내용변경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 경우 착오발견 즉시

다. 제출서류

- (1)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 공통내용 변경)
- (2)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8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신고대상**

- (1) 사용관계 종료(퇴직)
- (2)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3) 60세 도달
- (4) 사망
- (5) 60세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6)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7) 다른 공적연금 가입
- (8)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나.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다. 자격상실시기

-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1) 사용관계 종료(퇴사) 된 때
- (2) 60세에 달한 때
- (3)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일용·단시간근로자가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미만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된 단시간근로자가 가입을 미희망 하거나 사용자가 가입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는 상실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



예시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24.1.12~2.11. 월 55시간 근로, 2024.2.12~3.11. 월 59시간 근로, 2024.3.12~4.11. 월 65시간 근로>하다가 2024.4.14. 퇴사하고 **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2024.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2024.4.15.(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24.1.12~2.11. 월 55시간 근로, 2024.2.12~3.11. 월 59시간 근로, 2024.3.12~4.11. 월 65시간 근로>하다가 2024.4.14. 퇴사하고 **근로자 제의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2024.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2024.4.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 (4) 기초수급자가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때
- (5)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6)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때

◆ 다음 각 사유는 그 해당하게 된 날

- (1)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2)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3)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 해제된) 때
- (4)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적용제외 신청한 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 (1) 신청대상 :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 ※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 납부예외 불가(다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납부예외 인정)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전후휴가 납부예외인정 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2) 제출서류

-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나)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 (1)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예시 : 휴직일)
- (2)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 (3)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납부)
- (4) 해외파견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납부예외 대상이 아님에 유의

10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가.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나.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사례

◆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320만원, 480만원인 경우

$$A\text{사업장} \Rightarrow \frac{3,200,000}{3,200,000 + 4,800,000} \times 5,900,000 = 2,360,000\text{원}$$

$$B\text{사업장} \Rightarrow \frac{4,800,000}{3,200,000 + 4,800,000} \times 5,900,000 = 3,540,000\text{원}$$

◆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600만원, 700만원인 경우

- 소득월액은 다르지만, 둘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에 해당되어 조정한 기준소득월액이 2,950,000원으로 동일함

$$A, B\text{사업장} \Rightarrow \frac{5,900,000}{5,900,000 + 5,900,000} \times 5,900,000 = 2,950,000\text{원}$$

11

기준소득월액 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1) 개념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금액

(2)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원과 37만원임

나. 소득의 범위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한함)의 경우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한 금액은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다.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다) (가)와 (나)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2023년 기준 100만원)으로 결정함.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2) 근로자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 (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



Q & A

Q.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 소득월액도 정정해야 하나요?

A. 비정규직(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 변경으로 보아 근로계약 변경 시점으로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되어야 하며 재취득시 소득은 정규직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해당 근로 계약 시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 상실 및 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월액 정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현격한 근로시간 변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판단되므로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대상임

Q. 시급, 일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A.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입사(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단, 해당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렵고 월별로 소득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입사(복직)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 처음 3개월 동안 발생된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포함

구분	포함해야 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 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주)} ,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비과세소득(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주)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됨

(다)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 ➔ $\text{소득월액} = \text{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div 365 \times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 ☑ A사에 2023년 3월 6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급여 내역
- 기본급 : 1,000,000원 • 교통비 : 월 100,000원 •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



신고내용	적정 신고	착오 신고
신고 급여 항목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신고)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입사 월에 지급된 급여 항목만 신고)
산정식	$\{(1,000,000 + 100,000 + 200,000) \times 12 + (1,000,000 \times 4) + 500,000\} \div 365 \times 30$	$1,000,000 + 100,000 + 200,000$
신고소득 월액	1,652,055원 (국민연금에 신고해야 할 소득월액)	1,300,000원 (실제 소득보다 낮게 착오 신고한 소득월액)

※ 업무 특성 상 야간수당 등 특정수당이 당연히 매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시:종합병원 간호사, 생산현장 근로자 등)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받은 수당의 최소 지급 금액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적용기간

- 2023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24년 6월까지 적용
- 2023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25년 6월까지 적용

(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

- (가) 조정대상 : 2024년 7월 1일 현재 신고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인 가입자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 전체
- (나) 조정시기 : 2024년 7월 1일(매년 7월)

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1)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기간

(가) 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미만 절사)을 소득월액으로 결정
-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결정

(나)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2) 신고 및 결정대상

- 사업장가입자로서 전년도 중 1개월 이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자(12월 1일 현재 납부예외중인 자 제외)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과세자료착오 및 연말정산 미신고 근로자
 -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자료를 공단이 직접 입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별도의 소득총액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3) 신고기한 및 방법

(가)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

-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신고

(나) 유의사항

- 근무 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 근무일수를 합산해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 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4) 기타 사항

-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지급하여 소득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하여 소득 신고
- 근로조건 변경과 소득총액 신고기준
 - 입사 당시부터 인턴(시보)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인턴기간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사전 예측 불가) :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마.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 (1)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율(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가능

신청사항이므로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자는 해당연도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 (2) 시행시기 : 2014.1.1.부터 시행
- (3) 적용대상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으며,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 (4) 소득변경 인정범위
- (근로자)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 (사용자) 변경 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다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에 의한 변경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도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되면 특례 재신청 가능

- (5) 신청방법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소득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용자) 변경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 (6) 정기 및 수시정산 실시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조하여 익년도에 사후확인 실시하여, 연금보험료 정산 실시
 - (수시정산) 사후(정기) 정산완료 이전에 자격상실(납부예외) 및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연금액 산정이 필요한 근로자

- (정기정산) 전년도에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된 개인사업장사용자 및 자격상실(납부예외)되지 않은 근로자
- 사용관계종료 등의 사유로 익년도 정기정산 완료 이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납부예외)된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조하여 사후확인 실시하여, 연금보험료 정산

-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를 신청한 사업장가입자만 정산 대상임
- 사용자는 당해연도(1월~6월)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내년도 정기정산에 포함

바.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 통지

(1) 신규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통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매월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2)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 공단은 매년 6월 중순경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전년도 이후 EDI 이용 실적이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정기결정통지서를 EDI로만 통지
 - 연봉제 시행 등으로 정기결정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EDI로만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EDI를 통해 우편 제외 신청
 - ☞ EDI 소득총액신고서 및 정기결정내용 사전안내통지서 화면에서 신청

사. 소득 적정신고 확인·정리

(1) 개요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2) 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과세소득이 수정된 근로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 취득(납부재개)시 신고소득이 과세소득 대비 낮은 근로자

(3) 내용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신고 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 안내문 발송
- 소득관련 공적자료에 비해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인 7월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단,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소득이 실제지급이 약정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대상은 취득(납부재개)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참고

2024년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 소득총액신고

-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 전년도 소득총액

- 2023.01.01. ~ 2023.12.31. 기간의 소득총액
※ 연도 중 입사자(사업개시자) : 입사일(사업개시일)부터 ~ 2023.12.31.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

☑ 주요업무 흐름

- ⇒ 2024. 4월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대상자와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 ➔ 2024. 5월 신고대상자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 2024. 5월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 2024.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공단)
- ➔ 2024. 7월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 2025.6월까지)
- ➔ 2024.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총액 신고요령

☑ 신고대상

- 2023.12.1.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중인 자 및 2023.12.2. 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제외
※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 신고할 사항

- ⬢ 근무일수 : 2023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일수(휴직일수 제외)
- ⬢ 소득총액 : 위 근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 사용자(법인 아닌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전 금액)을 신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 상 ⑪번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 +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포함하여 신고[(18)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M02)]
 - ※ 면세나 비과세 등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예 :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공단에 소득총액신고 대상임
 - ※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

☑ 신고기한

- ⬢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 2024년 5월말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4년 6월말까지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3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 및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 2023.12.1.이전 취득자 : 2023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적용
- ⬢ 2023.12.2.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25년 6월까지 적용
 - ☞ 신고소득이 2024년 7월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변경됨

☑ 소득 적정신고 여부 확인

- ◆ 2024. 6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신고
- ◆ 2024. 11월 과세자료 대비 개인사업장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2024년 7월)으로 소급하여 과세소득으로 조정

〈작성방법 예시〉

※ 23.3.1. OO상사에 입사, 5.1.일부터 5.31.까지 휴직, 6.1부터 복직 근무

(단,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도 없음)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⑨근무처명	OO상사	□□기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2023.3.1.~2023.12.31.				
⑬급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⑭상여	5,000,000	500,000			5,500,000
⑮인정상여					
⑯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2023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근무시작일	공적 휴직일수	실제 휴직일수	소득총액
				0001	홍OO	123456-12****	

◆ 근무일수 및 소득총액 산출 사례

- 동일 사업장에 2023.1.1. ~ 3.25.(퇴사) 2023.8.1.(재입사) ~ 12.31.근무 : 153일 (8월 ~ 12월까지만 적용)
- 소득총액도 2023.8월 ~12월까지 소득만 신고



기타 소득총액 신고방법

☑ EDI 신고

● 국민연금 EDI(<http://edi.nps.or.kr>)

- ① “연금통지문서” → “연금통지문서” → ②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통지서” 조회 →
- ③ 개인별 소득총액입력 → ④ “신고서발송”

● 사회보험 EDI

- ①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년)”수신 → ② “문서조회” → ③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④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유선 신고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 (팩스신고) 앱 하단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한 웹팩스 신고

12 일용 근로자

가. 일용 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정내용

(8일 적용 : 2018.8.1.시행, 소득기준 추가 : 2022.1.1.시행)

○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근로자에 포함” 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준 구체화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의 소득

〈개정 전 · 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 판단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간 또는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건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 일반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나. 건설현장사업장

(1) 사업장 적용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 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도 당연 가입

(2) 건설현장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필수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
 - (원도급 또는 하도급)공사계약서
 - 추가서류 : 경과조치 사업장 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신고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 사업장 탈퇴
 - 탈퇴일 :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다만,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날의 다음날
 - 탈퇴 사유코드 : “09-사업종료”로 등록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 가입대상
 -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 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220만원 이상의 소득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일

-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 ②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 초일(1일)**
- ③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최초근로일로부터 1개월 간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자격상실일

-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② 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최종월 초일(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자료실]-[기타자료] 에서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책자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4) 건설 일용근로자 소득적용 기준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기준소득월액 특례)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다. 일반 일용근로자

(1) 정의

● 건설현장 외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2)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 가입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또는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220만원 이상의 소득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건설현장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업무 프로세스

구 분	적 용 절 차
사업장 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적용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별첨】참조) 제출 - 경과조치 사업장은, 입증서류 제출(필요시) ● (EDI로 신고)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성립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취득신고 :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 된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 가입자 상실신고 : 퇴사하거나 8일 미만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 된 때 ● 소득변경신고 :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을 때 ● (EDI로 신고) 다음달 5일까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일괄경정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
 수시경정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 EDI로 신청하거나 지사에 내방(전화)하여 신청 ● 수시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 확정 후 경정결정내역서를 EDI로 재송부 ● 사업장은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 (가)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 (나)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마)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관련 사항

-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가)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 (나)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외국국적동포는 법률상 외국인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 가능
-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관련 기타신고사항은 내국인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23.9월 기준 현재 134개국)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6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37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멘(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베트남, 캄보디아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1개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베트남 : 사업장 적용제외, 지역 적용제외 →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2022.1.1.)
 캄보디아 : 사업장 적용제외, 지역 적용제외 →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2023.3.29.)
 솔로몬군도 :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당연적용 →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2023.7.11.)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가. 체결목적

- ◆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1) 단기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보험료 면제, 이중가입 배제)
 - (2) 외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가입기간 합산)
 - (3)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함 (동등 대우)

나.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
 - ※ 협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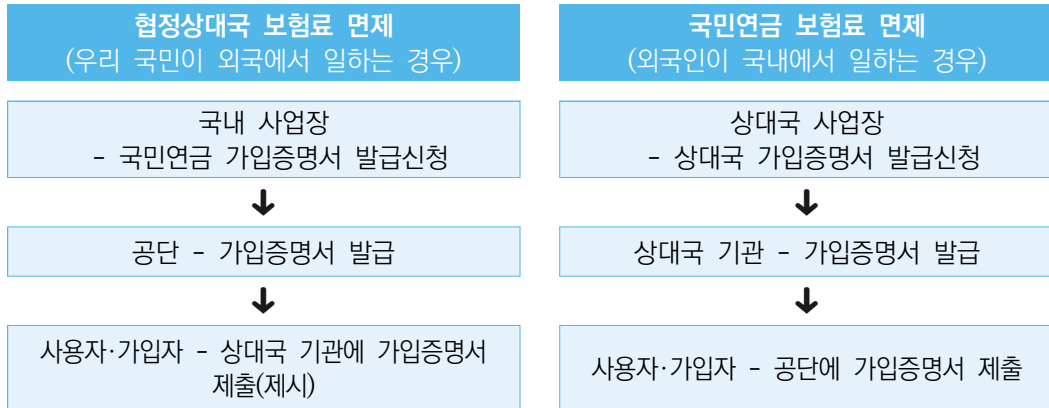
2023.9월 기준

구 분	국 가	협정발효일	파견근로자 면제기간	협정형태
협정발효 (38개국)	이 란	1978. 06. 01.	기간제한 없음	• 보험료 면제협정
	캐나다	1999. 05. 01.	5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영 국	2000. 08.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5년(4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독 일	2003. 01. 01.	2년(합의시 6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네덜란드	2003. 10. 01.	5년 (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일 본	2005. 04.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3년(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E-8, E-9는 가입증명 없이 면제)
	몽 골	2007. 03. 01.	5년(4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3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프랑스	2007. 06. 01.	3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호 주	2008. 10. 01.	5년(합의시 4년 연장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체 코	2008.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아일랜드	2009. 01.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벨기에	2009. 07. 01.	5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폴란드	2010. 03.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바키아	2010. 03. 01.	5년(2년 6개월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불가리아	2010. 03.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루마니아	2010. 07.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2010. 10.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덴마크	2011. 09.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인도	2011. 11. 01.	5년(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중국	2013. 01. 16.	파견자 : 5년(합의시 8년 연장가능) 현지채용자 : 5년	• 보험료 면제협정(동 개정협정 발효로 '03년 중국 잠정조치협정 종료)
	스페인	2013. 04. 01.	5년(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위스	2015. 06. 01	6년	• 보험료 면제협정
	터키	2015. 06. 01	3년(합의시 4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웨덴	2015. 06. 01	2년(합의시 6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브라질	2015.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칠레	2017. 02. 01	5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핀란드	2017. 02.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퀘벡	2017. 09.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페루	2019. 01. 01.	4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룩셈부르크	2019. 09.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베니아	2019. 10.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크로아티아	2019. 11.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우루과이	2021. 11.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뉴질랜드	2022. 03. 01.	-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제외)

※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이나 반환일시금 미지급 국가(6개국)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다. 보험료 면제 요청

◉ 보험료 면제 절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스위스는 6년, 캐나다·영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우즈베키스탄·아일랜드·벨기에·슬로바키아·폴란드·오스트리아·몽골·체코·호주·덴마크·인도·중국·스페인·브라질·칠레·핀란드·퀘벡, 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우루과이는 5년, 페루는 4년, 이탈리아·헝가리·프랑스·불가리아·루마니아, 튀르키예는 3년, 독일·스웨덴은 2년) 동안 파견된 근로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의 파견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중국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8년, 독일·스웨덴은 6년, 미국·호주·몽골·튀르키예 4년, 영국·헝가리·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체코·폴란드·오스트리아·스페인·핀란드·퀘벡·브라질·인도는 3년, 슬로바키아는 2년 6개월, 불가리아·루마니아·칠레·크로아티아는 2년, 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페루는 1년)

※ 미국, 몽골, 이탈리아, 인도, 헝가리,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국가는 연장시 별도 합의 절차 필요

(2)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63-713-7101)

(3) 제출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중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산재 등 추가서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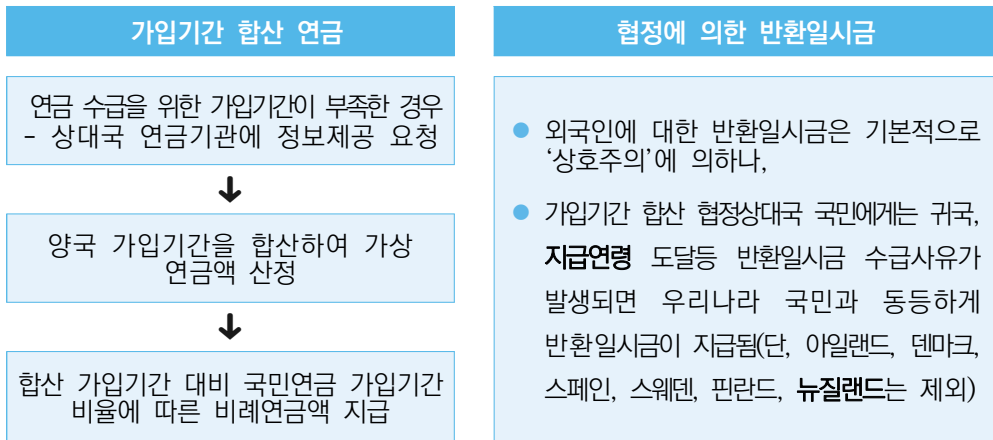
(4) 제출방법 : 내방, 팩스(063-900-3404, 중국전용 063-900-3405), EDI, 우편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 제출

- (1)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2) 제출서류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협정합의서식) 원본(사본 불가) 1부
 - 해당 사업장 면제요청공문(임의양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 몽골 등은 면제기간 내 취득이 불가하고, 중국은 면제신청서 접수일 익월부터 면제 가능함(단,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내 제출 시 소급 면제가능)
 - 중국 현지채용자와 협정국 파견근로자는 사업장 변동 시 면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면제 가능
- (3)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

라. 급여 지급 요청

◉ 가입기간 합산 절차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 (1) 대상
 - (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 (나)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다)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 ※ 2019.12.24. 신설된 E-8(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님

(2) 제출서류

-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출국)
- 해외송금 신청시 해외송금신청서 추가

📍 반환일시금지급대상 국가 : 48개국

2023. 9. 30.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솔로몬군도, 수단,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우간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 E-8(연수취업 체류자격 삭제, 2007.6.1.개정, 2010.10.1.시행),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2007.6.1. 개정) 당시 연수취업(E-8)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12.24.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되었으나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님

제4절

징수 관리



1

의의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함

2

연금보험료

가. 정 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text{연금보험료} = \text{기여금} + \text{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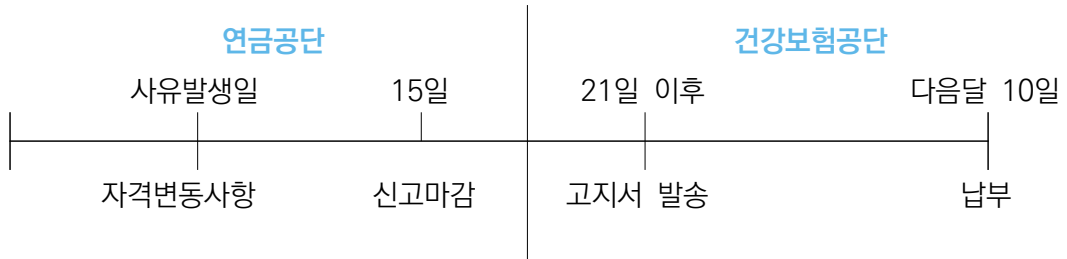
- (1)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10원 미만 절사함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가. 공단의 납입고지

(1) 납입고지 일정



(2)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3)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고지함 (말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요청)

$$\text{당월분 고지금액} = \text{당월분 연금보험료} + \text{소급분 금액}$$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합산 (+)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해당월로 차감 (-)

나. 기여금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함

(㉠) 사업장가입자가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함. 다만 자격취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가능함

※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득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 불가함.

- (나)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납부(전입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 (다)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 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통폐합 또는 분리 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원천공제 사례]

구 분	사유발생 (월)	공 제		구 분	사유발생 (월)	공 제	
		원 칙	취득월 희망/초일			원 칙	취득월 희망/초일
연령도달	18세 도달 월	×	○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	○
	60세 도달 하는 월	○	-		퇴사월	○	-
신규채용월	고용하는 월	×	○	납부예외	휴직월	×	-
				납부재개	복직월	×	○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 (1)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 (2)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 (3) 납기 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4 연금보험료 미납 시

가. 연체금

- (1)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해야 함.
- (2)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는 연체금이 최고 5%까지 가산됨
 -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2%, 이후 1개월 단위로 0.5%씩 추가가산 최고 5%적용 (2020.1.16.시행, 2020.1월분부터 적용)
 - ※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도입 (2016.6.23. 시행, 2016.6월분부터 2019.12월분까지 적용)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분의 1 가산
 -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시에는 1일 경과마다 3천분의 1 가산 (최대 9% 이내)

나. 독촉 및 체납처분

- (1)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국민연금법 제95조제1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95조제4항)
- (2)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함

5 과오납금 반환청구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급여의 환수금과 연체금, 미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과 보험료, 향후 납부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

※ 과오납금 근로자 개별반환: 사업장 폐업이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망행불 등으로 사용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부담 기여금을 근로자가 신청시 본인에게 반환 가능(2015.4.16.시행)

❖ **입사·퇴사 등을 적기 신고(매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 등 발생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 소급분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입사 등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사, 휴직 등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 연금보험료는 매월 자격변동처리기한(15일)까지 신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고지
➔ 자격변동사항(입사, 퇴사, 휴직 등) 발생 시 되도록이면 당월 자격변동 처리기한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변동 처리기한 : **자격변동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례
1

- 2024.3.1. 입사자(3월분부터 납부대상)
- 2024.3.15. 신고(적기 신고) : 3월분 고지서에 포함
- 2024.4.15. 신고(지연 신고) : 4월분 고지서에 3월분 함께 고지(소급부과)
- * 법정신고기한은 6.15.이나, 보험료정산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당월 15일까지 신고하세요.

사례
2

- 2024.6.21. 입사자(취득월 납부 미희망 신고, 7월분부터 납부대상)
- 2024.7.15. 신고(적기 신고) : 7월분 고지서에 포함
- 2024.7.16. 신고(지연 신고) : 8월분 고지서에 7월분 함께 고지(소급부과)

사례
3

- 2024.6.16. 퇴사자(6월분까지 납부대상)
- 2024.7.15. 신고(적기신고) : 7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 2024.9.13. 신고(지연신고) : 9월분 고지서에서 제외되며, 기 납부된 7~8월분 보험료는 과오납금으로 발생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 또는 지사로 문의하세요

6

추후납부제도 안내

가. 개요

-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2020.12.29.이후 추납신청기간은 119월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추납대상기간

- 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
-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1999.4월 이후), 기초수급자(2001.4월 이후) 및 1년 이상 행방불명자(2008.1월 이후)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
- ③ 1988.1.1. 이후 군복무 기간(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기간 제외)
- ④ 2015.7.29. 이후 18세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23.9.29.시행)

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1) 신청대상 요건
 - 현재 자격유지기간 중이어야 함
 - 적용제외자의 경우 임의가입 후 신청가능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은 최소 1개월분(과소납 불인정, 반환일시금 지급된 기간 불인정)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의미
- (2) 신청 시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혼인이력 확인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8세미만 적용제외 기간 추납 신청할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단, 군복무기간에 대해 추납 신청할 경우)

라.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 납부횟수 1회, 납부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2) 분할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납부기한은 신청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 (3) 이자율 :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제5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대상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으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자

* 고시소득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24년 기준 270만원)

(1)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으로 소급된 신규사업장도 동일 기준 적용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면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규모 판단 기준일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분리적용 사업장(본점 및 지점으로 분리된 경우)도 동일하게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예외적용)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단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 (건설현장사업장)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본점(타지점포함)(A)	건설현장(B)	지원여부
10명 미만	10명 미만	A,B 모두 지원
10명 미만	10명 이상	A만 지원 (본점은 건설현장의 10명 이상 여부와 상관없음)
10명 이상	10명 미만	A,B 모두 미지원 (건설현장은 본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비대상)

● 기타 판단 기준

- 외국인 : 보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경우,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인사혁신처 고시)

-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 불가

-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 제외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직권) 지원제외 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계속지원 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료지원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 계속 지원

(2) 근로자 소득기준 및 지원기간 상한

⊕ 기준소득월액이 고소득 상한액(2024년 :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 (‘16.11.30. 시행)

- 재산 및 종합소득 범위

- (재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재산 및 종합소득의 보유수준 : 아래의 재산 및 소득의 보유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원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 지원기간 : 근로자별 36개월
 - 기존(30% 지원받는 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 기한내 완납 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1년부터는 지원 중단)
- 지원기간 산정기준
 - '18.1.1.이후 지원받은 기간에 대해 적용
 - 신규가입자나 기존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둘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각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3) 일용근로자 두루누리 소급 지원

- (개요)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급 지원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 (적용기준일)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22.1.1.) 이후 제출된 2022년 1분기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부터 적용
- 두루누리 소급 지원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 신청이 유지 중인 사업장¹⁾에 가입이력이 있는 일용근로자²⁾를 대상으로 완화된 신규가입자 요건³⁾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험료 소급 지원⁴⁾

1) (소급 지원대상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신청이 유지 중인 사업장

2) (소급 지원 일용근로자) 아래 ① + ② 모두 충족

-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건 전체 중 해당연도 보험료지원 고시금액 미만인 가입 이력
- ② 일용근로자 여부(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내 제출)

3) (일용 신규가입자) 자격 취득일(변동일) 직전 6개월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4) (보험료 소급 지원) 일용 근로내역 소급분 보험료가 포함된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소급 지원금 공제

🔍 **현행 두루누리 지원과 일용근로자 '소급 지원' 비교**

구분	현행(상용근로자 중심) 두루누리 지원	일용근로자 '소급'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근로자 10인 미만	
가입자	지원 월	당월(소급 ×)
	판단 자료	없음
	신규인정 기준	취득신고일 직전 6개월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 시기	당월분 납부 확인 후 익월 지원
	신규 인정 판단 기준일	취득신고일
	환수	지연 신고, 소득 110% 초과, 사업장 10인 이상, 타법 지원, 재산·종합소득 초과 등
	기타	○ 건설·하역작업 일용근로자 요건 해당 시 지원 대상 ○ 보험료의 80% 지원, 월소득 270만원·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최대 36개월(일용 소급지원기간 합산) 지원 등은 두루누리과 동일

2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금액 (2021.1.1. 개정 시행)**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	'21년부터 지원 중단 (종전 30% 지원자)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각 4.5%

● **가입자 구분**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신규가입자 기준)**

※ 원단위 금액은 절사 후 지원금액 산정

- 기준소득월액 1,155,000원(연금보험료 103,940원)
 - 사용자부담금 : 1,155,000원 × 4.5% = 51,970원
 - 근로자기여금 : 1,155,000원 × 4.5% = 51,970원
- 보험료지원금액 : 51,970원 × 80% = **41,570원**(원단위 절사) × 2 = **83,140원**
- 실납부보험료 : 103,940원 - 83,140원 = **20,800원**
 - 사용자부담금 : 51,970원 - 41,570원 = 10,400원
 - 근로자기여금 : 51,970원 - 41,570원 = 10,400원

📍 지원방법

-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고지
(보험료 납기내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두루누리지원금**”으로 명시
 -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장에 다음달(지원금 공제받을 월)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3 지원 및 제외신청

📍 신청서 접수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제보 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온라인 신고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기준소득월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다음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의 110%(’23년도 기준 286만원, ’24년도 기준 297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 시 되는 경우 개별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식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신청 가능(전자신청: <http://www.4insure.or.kr>)
 - * 당월 초일~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당월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격마감일이 당월 15일 경이므로, 되도록 해당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 공단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음**
- 매월 자격마감일(15일경)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대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
 - 월보험료 자료 구축 이후(매월 25일경)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사업장에 통지
 - 근로자용 통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업주가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토록 안내

⊙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 신규가입자 중 취득 신고 당시 신고소득은 적정하였으나, 추후 성과금 수령 및 급여 상향 등으로 다음연도 정기결정 시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가 초과될 것이 확실 시 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 큼
- 이에 개별 지원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환수 발생 최소화
 -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 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제출(유선접수 불가)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및 보수변동월 기재 시 월급여가 불규칙한 경우 제외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의 당해연도 급여를 확인하여 추정 월평균보수액을 계산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확인을 통하여 보수변동월(초과사유발생월) 다음달 ~ 지원제외 신청 이전까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보험료지원 제외 사유

- ② 보험료 지원 제외 근로자(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보수변동월	
			년	월
			년	월
			년	월

- ※ 신규 입사일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은 해당연도의 추정값을 기재합니다.
 ※ 보수변동월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하게 된 보수변동월을 기재합니다.

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 부정수급 및 환수

-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예시)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지 않아 10명 미만 요건 충족 후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규모)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것이 사후 확인되는 경우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환수
- (근로자 소득월액 기준)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다음연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 ('23년도 기준 286만원, '24년도 기준 297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단, 지원제외신청 시에는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 환수절차

- 공단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 수행
- 납부의무자 : 보험료지원 사업장 사용자
- 고지 및 납부기한
 - 환수대상자 결정: 매월 정기고지마감 익일(21일 경)
 - 정기고지
 - 환수결정통지서 및 고지서 동봉 발송 : 매월 25일 경
 - 납부기한 : 환수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 독촉고지
 - 최초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
- 고지금액
 - 환수 결정된 보험료지원금 전액 고지(연체금 또는 가산이자 없음)
-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 발송
 - 가동중사업장 : 사업장으로 발송
 - 탈퇴사업장 : 사용자(책임대표자) 주소지로 발송
- 납부방법
 - OCR장표(창구수납),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고정가상계좌, 일회성 가상계좌, 신용카드

나.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방법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 등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가사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지청

-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① 소득기준 및 지원기간 상한

⦿ 지원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는 제외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 재산 및 종합소득의 범위
 - (재산)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재산 및 소득 기준
 - 지원 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보험료 지원 대상의 재산·소득 기준 요건

- 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②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6.16.)이후 약 3년 내('24.12.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② 지원수준 및 방법 (“가.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제도”와 동일)

2 지원 및 제외신청

① 신청서 접수

◇ 사용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첨부하여 접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인증서를 미제출할 경우, 보완 요청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인증서와 가사법 홈페이지(가사랑, www.gasarang.go.kr)에서 가사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여부 확인 가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신청방법

- (신청 서식)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첨부 서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 고용, 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 국민연금 웹EDI(edi.nps.or.kr), KT 사회보험 EDI(bips.bizmeko.com)

② 지원 결정 통보

◇ 전월에 신청·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당월 정기고지 시 자격마감일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익월 25일경)

- (통지방법) 「국민연금 가사근로자 보험료지원 사업장 결정 통지서」 우편발송
- 지원대상 “0”(신규사업장 포함)인 사업장 탈퇴 시까지 신청효력 유지

③ 지원 제외 신청

- ◆ 보험료 지원 중 두루누리 지원, 사회적 기업지원, 1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지원제외 신청 시 지원 중단
- 고시소득 상한액 110% 초과(근로자)
 - (적용대상) 신규가입자 중 취득 신고 당시 신고소득은 적정하였으나, 추후 성과금 수령 및 급여 상향 등으로 다음연도 정기결정 시 고시 소득상한액의 110% 초과가 예상되는 자
 -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 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 기타 : 위 이외의 사유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지원제외 신청하는 경우
 -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자 지원제외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지원제외 신청
 - 가사근로자(관리직 포함)가 아닌 경우, 사회적 기업 및 기타보조금 지원 등 사유로 사업장 및 특정 가입자를 지원제외 신청
- ◆ 신청방법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신청서(유선접수 불가) 제출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신청은 각 기관별 접수 후 처리(포털 신고 불가)

3 타 지원 제도와의 관계

- ◆ 가사근로자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다른 사업(두루누리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두루누리 지원 제도와 비교

구 분	두루누리	가사근로자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규모 제한 無(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사업장 범위	법인, 개인	법인
소득상한액	270만원	좌동
지원 제한	재산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좌동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제한없음 (신규가입자, 기가입자)
지원 수준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좌동

다. 실업크레딧제도(2016.8.1. 시행)

1 개요

-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
 - *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이 이직 후 일정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 ◆ 실업기간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은 별도로 확인 처리해야함

2 제도 안내

-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다만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 제외
- (2) (지원방법)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나머지 보험료인 75%를 지원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음
 - 예를 들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 본인이 15,75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47,250원을 지원

$$\text{연금보험료} = \text{본인부담(25\%)} + \text{지원(75\%)}$$

- (3)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 ~ 270일(월로 환산시 4 ~ 9개월)
- (4)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하는 경우 또는 실업인정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인정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제6절

증명서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증명서 발급

가. 의의

해당 사업장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보험료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나. 청구자료 유형

청구자료	설 명	비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상황 등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해당 사업장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전체내역(취득, 상실)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연도별)	●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연도별 납부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업장가입자 개인별(전체, 특정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 적용시기: 1993.1.1. 시행 / 1999.4.1. 폐지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해당 사업장의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 자격변동에 따른 소급분 내역 등 표기	

다. 신청자격

사업장 사용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중인 자

라. 제출서류

- (1)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부
- (2) 신청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가입중인 사업장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방 문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신청자(업무담당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회 보험 자격유지자 또는 공적자료 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한함 ※ 증명서 발급 요청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사용자 신분증(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기타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구비서류 전부 필요 법인사업장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 신청
팩 스 / 우 편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분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 팩스번호 또는 업무대행업체 팩스 번호로 송부 가능 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 팩스번호 또는 업무대행업체 팩스 번호로 송부 가능 신청자(업무담당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회 보험 자격유지자 또는 공적자료 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 신청 ※ 증명서 발급 요청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사용자 신분증(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유 선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소지 신청자 본인여부 확인 후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에 한해 발급 가능 신청자(업무담당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회 보험 자격유지자 또는 공적자료 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한함
	업무담당자		

※ 유효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분리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점·지점 구분없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증명서 발급(법인등록번호 일치)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는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 또는 지사 별도 문의

탈퇴 사업장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방 문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이전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증명서만 발급 가능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 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사용자의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팩 스 / 우 편	최종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신분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한 팩스번호로 송부 최종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유 선	최종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에 한해 발급 가능 신청한 팩스번호로 송부

2 가입자의 자격확인청구

가. 의의

사용자의 신고기피 또는 신고누락으로부터 가입자(이었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식 심사청구 제도로, 자격의 취득·상실·기준소득월액 및 가입종별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가입자(자격상실자 포함)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청요건

- (1) 청구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 (2) 청구할 수 있는 사유(범위)
 - 사용자의 취득신고누락, 취득일 잘못신고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상실신고누락, 상실일 잘못신고 등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관한 확인 사항
- (3) 제출서류
 - 자격확인 청구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3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가. 의의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서비스

나. 서비스 종류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사업장 가입정보조회,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조회, 사업장 가입누락신고(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청구), 보험료지원 신청누락신고, 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
 ※ 실태조사청구는 익명으로도 청구가능하며, 실명청구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청구

다. 이용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참여 > 신고센터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 요

사용자가 당월 자격신고마감일(매월15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과 성명·기준소득월액 등의 내용변경 및 내용정정에 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사업장 및 가입자(였던 자)에게 알리기 위함

나. 발송시기

매월 25일경

다. 주요내용

- (1) 취득·상실·납부예외·재개 : 가입자(였던 자)의 취득·상실 등을 표기
- (2)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전월 이전 자격변동자를 당월에 지연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급기간의 월수 및 금액(당월분 제외)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감(-)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합산(+)

라.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 (1)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자격변동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마. 사업장가입자 신고서 처리결과 즉시알림서비스 시스템

- (1) 개요 : 매일 발생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 등 자격변동사항을 처리익일 사업장 팩스로 처리결과 통지
- (2) 통지제외 사업장 : EDI가입 사업장, 탈퇴사업장, 수신거부사업장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가. 개 요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을 매년 통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1회 발송

나. 주요 안내사항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부터 현재까지 가입내역, 예상연금액, 각종 제도안내 등

다. 기타사항

- (1) 안내문은 가입자의 집주소(주민등록상)로 우편발송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송달지 지정 가능
 - E-mail 신청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 대해 모바일 전자문서 연계(네이버 전자문서→카카오 인증톡→MMS) 발송 후, 발송실패 등 미도달 시 우편 발송
- (2) 가입내역안내서는 매년 생일 달에 발송(2012.1.1.이후)되며, 내용은 자료 구축시점으로 안내되므로 자격소급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3) 외국인가입자는 자국어로 안내(15개 언어 70개국)
 - ※ 향후 베트남어 추가 예정(베트남 사업장 당연적용: 2022.1.1.)

제7절

신고 편의제도



1

EDI 서비스

가.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공통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결정내역 등의 각종 통지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나. EDI 서비스 이용 시 좋은 점은?

- ⦿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4대 기관 방문시간 절약
- ⦿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수시 국민연금의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수신 가능
- ⦿ 국민연금 제 증명서를 지사 방문 없이 EDI로 발급 가능(직인날인)
- ⦿ 완벽한 보안체제로 개인정보보호

다. EDI 서비스 내용

(1)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업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동시신고가 가능한 신고업무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취득(상실) 취소 공통신고 가능(국민/건강만 해당, 2022.7.1.부터)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 여부, 취득일(국민/건강만 해당)변경 가능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

(2) 국민연금 고유신고(청) 업무

국민연금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업무	
연금고유신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소득월액, 취득/상실일, 납부재개예정일, 체류자격, 취득월납부여부 등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 등록/해지신청서 ● 소득총액신고서(연간업무) ● 소급분 분할납부신청서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및 제외신청서 ●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연금보험료 경정처리결과 신청서(일반/건설)
증명서신청	①가입자 가입증명 ②사업장 가입증명 ③사업장 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④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 ⑤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⑥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사업장가입자 명부 ⑧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⑨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⑩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⑪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신청서

(3)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및 통지업무

EDI로 신고·신청한 자료의 처리결과 및 국민연금 통지업무		
신고서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로 발송한 신고서 처리결과 조회 ● EDI로 발송한 신고내역 조회 	
통지업무	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1차) - 매월 17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당월분 결정내역, 전월분 수납내역 ②가입자내역 ③(예정)당월분 산출내역 ④소급분내역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2차) - 매월 21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⑥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⑧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⑨(최종)당월분 결정내역 ⑩연금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⑪연금보험료 지원제외결정통지서 ⑫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⑬연금보험료지원예정대상자 ● 정기자료 확인대상자(매월 5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명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② 납부재개 예정자 ③ 납부재개 예정일 경과자 ④ 특수직종근로자 ⑤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신고대상자 ⑥가입확인대상자 명부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내역서(매월 6일경)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총액신고대상자 통지서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 대상자 명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대상자 명부

라. EDI서비스 이용방법 및 제공서비스

2012.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국민연금 웹 EDI서비스와 KT중계망을 통해 사회보험 EDI서비스(이용자가 KT에 요금 납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 인터넷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EDI 서비스 <https://edi.nps.or.kr> 이용방법



<p>① https://edi.nps.or.kr 접속 ※ 포털사이트 “국민연금EDI”로 검색</p>	<p>② “사업장관리번호 + “로그인” 버튼 클릭</p>	<p>③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단, 분리적용사업장은 본↔지점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 추가입력</p>	<p>④ EDI 서비스 이용 ※ EDI서비스 최초 접속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 개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책임)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 제공서비스

가입자 취득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작성 → 4대공통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해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송
가입자 내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작성 → 연금고유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해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송 ●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득취소는 EDI로 처리불가. 지사에서 처리 ● 지연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 → 증명서 발급신청 → 작성 후 신청서 발송 ① 가입자가입증명 ② 사업장가입증명 ③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한글/영문-퇴직전환금 포함) ⑤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⑥ (당월분)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⑧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⑨ 퇴직전환금 부과내역서 ⑩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⑪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⑫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내역 ☞ 증명서에 따라 즉시 발급 또는 10여분 소요(대규모사업장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출력가능 ☞ 증명서 → 증명서신청 처리결과에서 발급 확인이 가능
신고서 처리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 4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 신고서처리결과 → 신고서처리결과에서도 확인가능
통지문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통지문서 → 연금 통지문서에서 확인 ☞ 이전문서는 처리기간 변경 세팅 후 조회 ● 정기자료확인대상자, 소득총액신고서 등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내는 문서 수신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1·2차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17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내역 →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 2차(21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연금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예정 대상자)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에서 확인
오류 반송 처리 조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처리결과 → 신고서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가 '오류'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각 해당기관으로 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1일"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 연금통지문서 '타 신고방법 or 지사 재처리 결과통지' ●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EDI에서 첨부파일로 발송하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② 사회보험 EDI서비스 <http://bips.bizmek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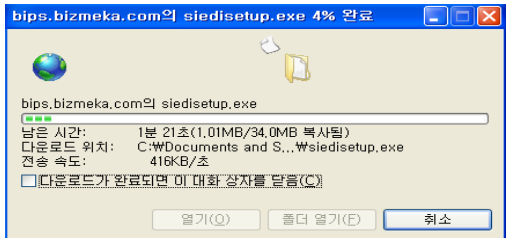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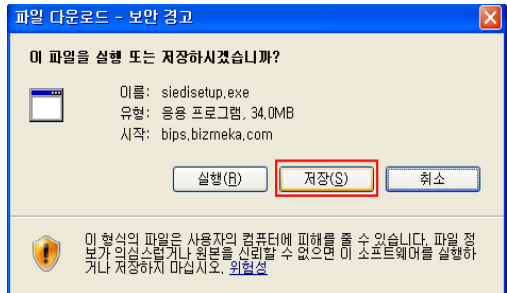
- EDI 회원가입후 서비스 가입확인(ID 부여받기) ▶ EDI 프로그램 설치(부여받은 ID로 접속)
- ▶ EDI 환경설정 ▶ 보안인증서 설치 ▶ 신고 및 신청 업무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 사회보험 EDI 가입 및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사회보험 EDI 포털 <http://bips.bizmeka.com>) 및 KT EDI콜센터 (080-318-5306)로 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사회 보험 EDI 포털 사이트 (<http://bips.bizmeka.com>)에 접속합니다.
- ② 사회보험 EDI 가입 시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합니다.
 ※ 아이디를 모를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거나 “서비스 가입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③ [사회보험EDI 설치]버튼을 클릭합니다.
- ④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서버로부터 담당자 컴퓨터로 다운로드 됩니다.
- ⑤ 다운로드 완료 후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며 <다음>버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⑥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치고 <완료>를 선택하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 위의 방법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우측 상단의 EDI 고객센터 → 자료실 “54.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⑦ 바탕화면에 사회보험 EDI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 이용요금

사회보험가입 인원수별	월 정액		
	국민연금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경우
5인 이하	무료	무료	무료
6~9인	1,100원 (부가세 포함)	1,100원 (부가세 포함)	2,090원 (부가세 포함)
10~49인	2,750원 (부가세 포함)	2,750원 (부가세 포함)	5,225원 (부가세 포함)
50~99인	4,070원 (부가세 포함)	4,070원 (부가세 포함)	7,733원 (부가세 포함)
100~299인	4,180원 (부가세 포함)	4,180원 (부가세 포함)	7,942원 (부가세 포함)
300~499인	4,400원 (부가세 포함)	4,400원 (부가세 포함)	8,360원 (부가세 포함)
500인 이상	6,600원 (부가세 포함)	6,600원 (부가세 포함)	12,540원 (부가세 포함)

-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함
- 이용요금은 사업장에서 신고·신청업무를 공단으로 송신한 해당 월부터 정액제로 부과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를 이용하시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요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요금 적용일자 : 가입자 수는 매월 25일경(휴일이 아닌 경우) 기준
- ➔ 복수서비스란 국민연금, 건강보험EDI 동시 사용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 사회보험 (KT) EDI서비스 제공서비스

<p>가입자 내용변경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 5 사업장 및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신고서 작성 (변경부호 확인) → 저장 송신 ●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득취소는 EDI로 처리불가. 지사에서 처리 ● 지연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p>증명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화면 우측상단의 제증명신청(연금) → 발급대상 클릭 → 저장송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자가입증명 ② 사업장가입증명 ③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⑥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명부 ⑧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여분 소요 (대규모 사업장은 약 1시간 소요) ☞ 수신함→연금고유문서에서 발급 확인
<p>신고서 처리 소요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 4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 수신함 → 4대공통받은문서(4대공통신고서) 연금받은문서(연금신고서) 에서 처리결과 확인
<p>수신문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처리결과 및 공단에서 통지하는 모든문서는 수신함에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함 문서는 수신일로부터 7일 후 자동 삭제되며 미수신 시 60일 후 자동삭제 ● 수신함에서 조회한 문서는 받은 문서보관함에 저장(재조회 가능)
<p>연금보험료 부과내역 1·2차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17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당월분 산출 내역, 소급분내역 →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 2차(21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 내역, 연금보험료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제외결정통지서, 보험료지원 환수금결정통지서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관련 사항
<p>기수신 문서 다시받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 2.전자문서 재송부 요청서 → 문서명, 재송부 사유 선택 → 문서등록 → 저장 및 송신 (30분 이내에 수신함 확인) ● 결정내역의 경우 1년 이내 자료는 재송부 가능
<p>오류 반송 처리 조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함에서 신고서 처리결과가 '오류'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해당 기관으로 확인. 국민연금 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1일"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신함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2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나.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의 장점

-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서비스 이용 가능
- (2) 4대사회보험의 현재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 (증명서 발급)
- (3) 헬프데스크를 통한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등의 안내서비스 이용 가능
- (4)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철저

다. 포털서비스 내용

- (1) 4대사회보험 신고 (* 국민연금 용어 기준)

구분	내 용	해당 보험	
사업장 (회원)	사업장	사업장 성립/탈퇴/내용변경 신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지원 신청(두루누리)	연금, 고용
		자동이체 신청(사업장)	연금, 건강, 고용, 산재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내용변경 신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건강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 신청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휴직 등 신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	건강
		이직확인서	고용
		소득총액 신고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고용
		대량민원접수(자격 취득/상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대량민원접수(피부양자신고)	건강
		개인(비회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상실/자격변동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건강		
자동이체 신청(지역가입자)	연금, 건강		

(2) 증명서 발급

사업장(회원)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미가입된 내역은 공란으로 표시. 과거의 이력은 보험별로 기관으로 개별 요청
	사업장 가입자명부 [※] (300인 미만)	
	(개별)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대상자 선택)	
개인(비회원)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4대사회보험 기관 지사로 가입자명부 발급 요청

라.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1) 접속 및 회원가입

- ① 홈페이지 접속
 - 주소창에 'www.4insure.or.kr' 입력
 - 포털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4대사회보험'으로 검색
- ② 회원가입(사업장만 해당 /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단, 공동인증서 필요))
 - 실명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 (중복 가입 가능)
 - ※ 설립된 지 3일 이내의 사업장은 실명인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국세청자료 연계)
 - 회원정보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기존 사업장관리번호 연동 가능
 - 공동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로그인에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 등록
 - ※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함

(2) 로그인

-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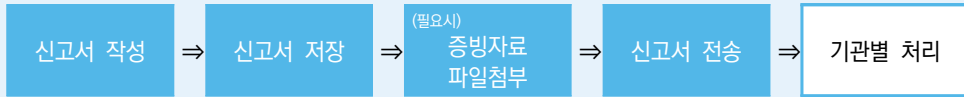
사업장	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회원)	개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또는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
개인(비회원)		이용자 개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발급 목적 기준)
 - 은행(증권)/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 범용 개인/기업 인증서, 보건복지전용 인증서 등
 - 특수목적용인 전자세금용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는 사용불가
 - ※ 센터는 별도의 인증서 미발급(해당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 ② 아이디 로그인: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불가**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
 - 비밀번호: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재등록
 - ※ 신규(재)발급하여 센터에 미등록된 인증서로도 인증 가능

(3)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① 민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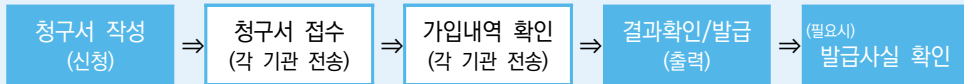
• 진행과정



- 신고서 작성시 신고서 상단의 [작성예시] 및 [안내영상 보기]를 참고

② 증명서 발급

• 진행과정



- 청구서 작성 전 출력가능 프린터 여부 등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

(4) 처리결과 확인

① 홈페이지 확인

- 홈페이지, 지사(방문, 팩스), EDI를 통한 모든 신고·신청의 처리 현황에 대해 조회 가능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처리 현황] 또는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 민원신고 처리 상태

처리상태	내 용
미전송	신고서를 작성(저장) 했지만 처리기관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
접수완료	처리기관으로 전송 대기중인 상태(포털사이트 내에서는 접수완료된 상태)
접수취소	작성(저장)한 신고서를 취소한 상태
전송완료	신고서가 처리기관으로 전송된 상태
처리완료	신고서가 처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상태
일부오류/ 처리오류※)	신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오류 처리된 상태

※ 해당 신고서의 [상세보기] 단추를 누르면 간단한 오류메시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오류내역은 [처리자, 지사번호]를 참고하여 처리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알림톡(SMS 등)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완료 후 알림톡(SMS 등) 수신을 신청한 경우만 확인 가능
- 최종 처리결과(처리완료/오류)를 처리 기관별로 확인

마. 이용문의

문의사항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운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63) 711-7800 (유료)	www.4insure.or.kr
제도 및 업무 처리 기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유료)	www.nps.or.kr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료)	www.nhis.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사업장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료)	www.comwel.or.kr total.comwel.or.kr
보험료 고지 및 납부, 납부확인서 등 징수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1577-1000 (유료)	si4n.nhis.or.kr

※ 홈페이지 이용 또는 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신고서 입력 내용 및 업무처리기준과 징수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부적인 업무안내 필요)

3

4대사회보험 QR신고와 OCR 인식시스템

가. 4대사회보험 QR신고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의 간편한 4대사회보험 신고를 위해 (주)더존비즈온과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SMART-A 나 WEHAGO T에서 4대사회보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QR코드가 인자되어 이를 인식하여 신고서를 간편하게 전송 및 자동처리하는 신고방법입니다.

나. QR신고의 장점

- (1) 전송시간과 비용이 절약
 - (기존) 신고서 작성 - 출력 - 직인 날인 - 이동 - 팩스전송 - 사후 확인
 - (개선) 신고서 작성-전송
 - (기존) 출력, 팩스 전송, 전송 후 전화 확인 등에 각각 비용 발생
 - (개선) 신고에 따른 일체 비용 없음
- (2) 직원이 입력하지 않고 자동 접수·처리되어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 방지

- (3) 4종의 신고서식은 완전자동 처리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 가능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보험료지원, 납부재개 등 4종 신고서는 전송과 동시에 완전자동 처리되어 보다 신속하게 4대보험 신고 가능
- (4) 프로그램에서 접수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
- SMART-A 내의 '사회보험 접수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접수결과 확인 가능

다. QR신고 가능 서식

구분	내 용	해당 보험	
사업장	국민연금 고유서식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경정고지신청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소득총액 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4대보험 공통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지원신청서	국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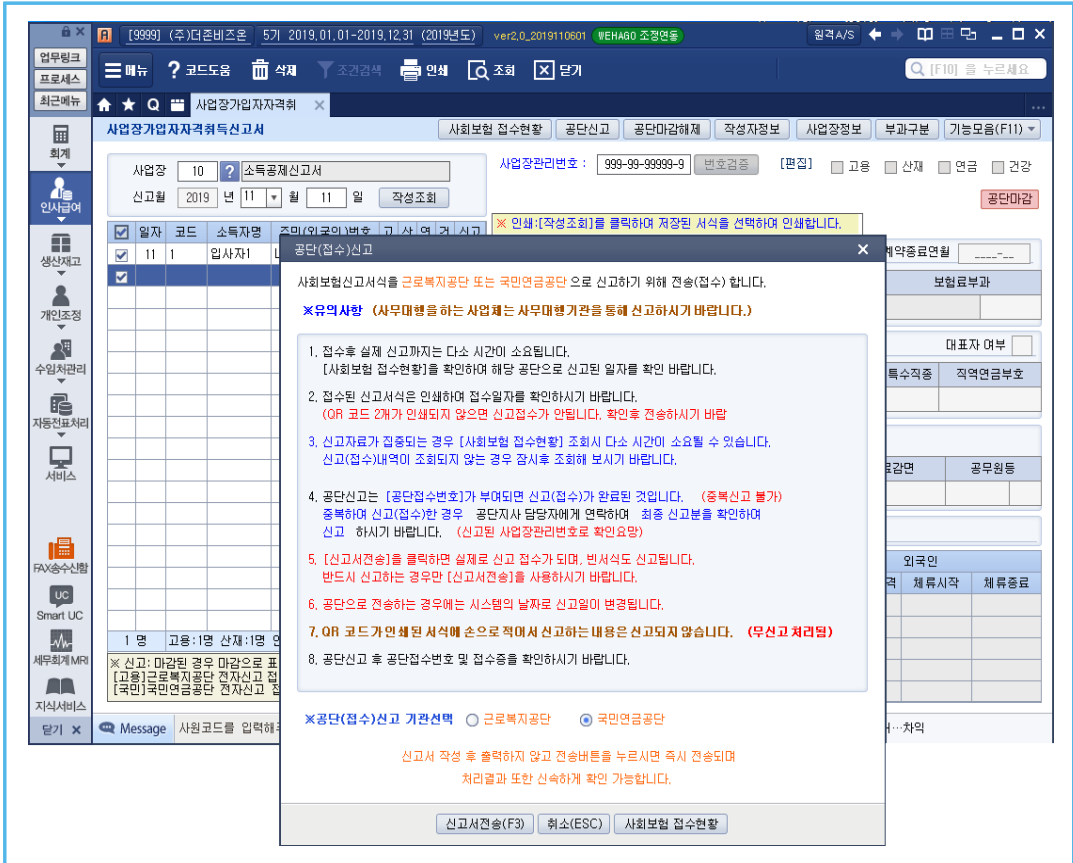
라. QR신고 처리 절차

- (1)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전송 가능 프로그램 : SMART-A, WEHAGO T

■ 사회보험 서식 QR코드 신고 사용방법

- 1) 작성자정보** : 신고서 신고후, 연락받을 신고담당자의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작성자 전화번호 입력 필수
- 2) 공단마감** : 해당 서식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 전송(접수)하기 위해 마감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적합성 검증 :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적합한지 체크할 때 사용
- 3) 공단신고** : 작성한 해당 서식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 전송(접수) 합니다.
※ 전자도장 날인하여 전송
- 4) 사회보험 접수현황**: 공단으로 전송(접수)된 신고서의 접수상태 확인 및 접수증 출력 가능

(2) 프로그램 입력 화면



마. 4대사회보험 OCR인식시스템이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의 4대 사회보험 신고처리를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으로 일반팩스로 접수된 신고서를 OCR시스템으로 판독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여 직원이 입력하지 않고 원본데이터와 대조하여 잘못 읽은 부분만 수정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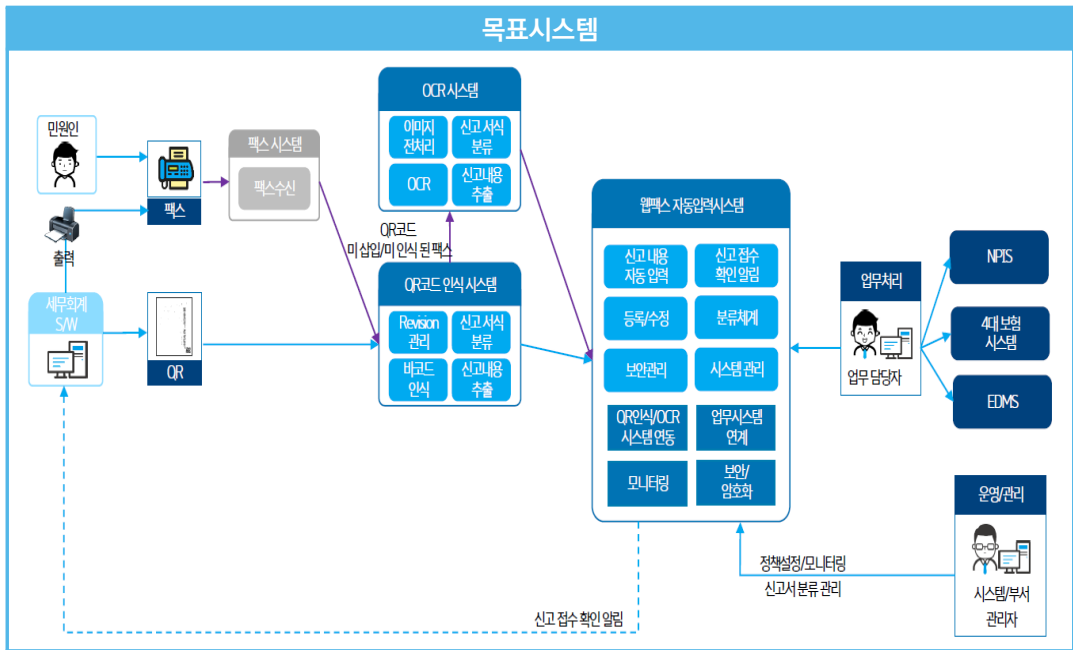
바. OCR신고의 장점

- (1) 직원이 입력하지 않고 화면에서 판독한 신고서를 처리함으로써 직원의 입력실수로 인한 오류 방지
- (2) 공단의 입력처리 시간 및 과정이 단축되어 보다 많은 신고서를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전송한 신고서가 신속하게 처리 가능

사. OCR신고 가능 서식

- QR 서식과 동일함

아. 국민연금공단 QR 및 OCR 구성도



자. 4대사회보험 QR 및 OCR 인식시스템 관련 Q&A

(Q1) 웹팩스 QR신고란 무엇인가?

- 공단과 협약을 맺은 (주)더존비즈온에서 운영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4대보험 신고 서식을 작성 후 전송(QR코드로 자동 변환)하면 국민연금 공단의 웹팩스 시스템에 전송되어 자동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Q2)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하는 것과 출력하여 팩스로 넣는 것의 차이는?

- 'SMART-A' 나 'WEHAGO T'에서 작성 후 전송하면 전용선을 통해 공단의 웹팩스 시스템에 전송되며 서식 4종(사업장가입자 취득, 사업장가입자상실, 보험료지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서식도 QR인식 완료되어 직원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반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팩스로 접수하면 QR코드가 제대로 읽히지 못한 경우 OCR인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식율이 떨어질 수 있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QR방식이 OCR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되나요?

- 네, QR로 인식해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빠른 처리와 처리결과 즉시 확인 할 수 있어서 사용이 더 편리합니다.

(Q4)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 시 도장날인도 가능한가요?

- 네,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전자 도장을 날인(클릭) 하면 됩니다.

(Q5)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4대보험을 신고하면 건당 비용이 발생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발생하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외에 신고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오히려 팩스로 넣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됩니다.

(Q6)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 네,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DI, 4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등, 팩스로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의로 작성한 서식이 아닌 공단 사이트에 있는 표준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OCR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제2장

국민연금 혜택

제1절 급여의 종류

제2절 연금급여액

제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제4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제1절

급여의 종류



1

개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연금급여로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 급여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 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사 망 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2

연금급여의 특징

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지급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60여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 물가가 올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줍니다.

처음 받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본인 과거 평균소득을 연금 지급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 하여 반영하고,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2023년에는 5.1% 인상조정

다. 지급된 급여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운영)

3 국민연금 수급자

- 1988년 1월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93년 1월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3년 6월에는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6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누적 기준).

[연금수급자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6,501,353	5,459,437	71,641	970,275

4 노령연금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포함)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구 분	요 건
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조기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전에는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 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전에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분할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 오래전부터 노령화가 시작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개혁을 1980년대부터 단행하여 현재 65세 또는 그 이상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노령연금	
		2013년 1월 이후	
~ '52년생	60세 부터	~ '52년생	55세 부터
'53 ~ '56년생	61세 부터	'53 ~ '56년생	56세 부터
'57 ~ '60년생	62세 부터	'57 ~ '60년생	57세 부터
'61 ~ '64년생	63세 부터	'61 ~ '64년생	58세 부터
'65 ~ '68년생	64세 부터	'65 ~ '68년생	59세 부터
'69년생 ~	65세 부터	'69년생 ~	60세 부터

5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 정도(1급 ~ 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 아래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초진일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장애등급 결정

-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일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또는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임

-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60세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이하 같음)

6

유족연금

-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0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부지급)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부지급)
- ※ 법 부칙 5조에 의거 종전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 적용 가능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8.11.29.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유족의 범위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요 건	
자녀	25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 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건부터 부모 및 조부모의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7

반환일시금

-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지급연령(60~65세)이 된 경우
 - ※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1999.4.1.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가출·실종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

제2절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 구성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기본연금액이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연금급여액 수준

-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의 9%(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4.5%, 사용자 부담 4.5%)로 40년간 납부 시 가입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라 소득의 40%~70%(소득대체율*)를 받게 됩니다.
- * 소득대체율이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 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지급률)을 말합니다.

가.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 산정식

$$[2.4(A+0.75B) \times P_1/P + 1.8(A+B) \times P_2/P + 1.5(A+B) \times P_3/P + \dots + 1.2(A+B) \times P_{23}/P] \times (1+0.05n/12)$$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금상승률 반영)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물가상승률 반영)
- P : 전체 가입월수(=보험료 납부월수)
- P₁ ~ P₂₃ : 연도별 가입월수
(P₁ : '88년 ~ '98년, P₂ : '99년 ~ '07년, P₃ : '08년, …, P₂₃ : '28년 이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A, B, n값이 클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1년치 연금액이며, 실제 지급할 때는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함

〈가입구간별 소득대체율 및 적용 비례상수〉

가입기간	'88~'98 (P ₁)	'99~'07 (P ₂)	'08 (P ₃)	'09 (P ₄)	'10 (P ₅)	(...)	'23 (P ₁₈)	(...)	'28 이후 (P ₂₃)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49%	(...)	42.5%	(...)	40%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2.4	1.8	1.5	1.485	1.47	(...)	1.275	(...)	1.2

※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비례상수는 매년 0.015씩 감소

-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급여수준 격차를 줄여주며, 물가변동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대상	요 건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 283,380원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	연 188,870원 / 1인당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2023년 5.1% 인상조정)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가.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서 일정 비율(1년당 5%)로 감액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종류별 급여액

구 분	급여수준		
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초과 1년당 기본연금액의 5% 증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 50% / 12) - 소득구간별 월 감액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액금액표(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 적용) 		
	초과소득월액	감액 산식	월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50만원 이상	
조기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기간이 10년, 55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 50% × 연령별 지급률 7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지급개시연령 1개월 지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0.5%(1세 지날 시 6%)씩 가산 		
분할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해당 하는 연금액의 1/2 		

[노령연금 예상월액]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200,000	108,000	206,860	308,380	409,910	612,970	816,020
4,000,000	360,000	349,480	521,010	692,540	1,035,590	1,378,650

-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2,861,091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 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나.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등급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등급 1급	장애등급 2급	장애등급 3급	장애등급 4급(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장애연금 예상월액]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장 애 등 급			장애일시보상금
		1급	2급	3급	4급
1,200,000	108,000	431,490	345,190	258,890	11,650,250
4,000,000	360,000	728,990	583,190	437,390	19,682,750

- 202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2,861,091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 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다. 유족연금액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연금 예상월액]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 2023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2,861,091원)을 적용하여 산정[10년 미만은 2023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9년 1월~2023년 12월(15년), 20년은 2004년 1월~2023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 10년인 노령연금수급권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던 노령연금액을 거의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라. 반환일시금액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함. 단,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마. 사망일시금액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액에 생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연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3절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1

지급기간

- ◆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지급연령도달일(60세~65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1년 6개월 경과일 등,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파양, 25세 도달(자녀), 19세 도달(손자녀) 등으로 소멸합니다.

2

지급일

- ◆ 연금급여는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 본국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방법

-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급여 청구 안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안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청구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국민연금 청구대상여부와 청구대상인 경우 청구할 급여의 종류, 구비서류, 관할지사 주소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4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1

국민연금 급여 간 중복급여의 조정

- 중복급여의 조정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2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는 등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않음)
 - * 2016.11.30. 이후부터 30% 적용(종전 20%)
 - ②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법 제80조제2항(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급여의 조정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제 3 장

부 록

부록 1 권리구제 제도

부록 2 국민연금법령

부록 3 서식 자료

부록 4 예상연금월액표

부록 5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소개

부록 6 지사 주소 및 전화 팩스번호



부록1

권리구제제도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 개념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나. 심사청구의 대상

자격·기준소득월액·급여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 (1)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결정 통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 공단
- (2)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등 : 건강보험공단
- (3) 심사청구의 대상(처분)이 아닌 경우 : 일반적인 제도안내 및 상담,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예상연금액 안내, 압류예고 통지, 법 제114조(대위권 등)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로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구상금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임)

다. 심사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방식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 (1) 관련법 규정(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사
- (2)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인용)
 - 각하 :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제기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함
 - 기각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단 원처분을 인정하는 기각결정을 함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공단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결정을 함
- (3)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통지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임

나.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부록2

국민연금법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내는 금액을 말한다.</p> <p>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p> <p>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p> <p>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p> <p>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p> <p>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p> <p>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p> <p>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p> <p>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p> <p>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p>	<p>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p> <p>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p> <p>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p> <p>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p> <p>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p> <p>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p> <p>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p> <p>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p> <p>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p> <p>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p> <p>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p> <p>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p> <p>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p> <p>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p> <p>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p> <p>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p>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p> <p>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p>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p> <p>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인</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p>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p> <p>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p>④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p> <p>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 자료,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총당·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p>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국민연금가입자</p> <p>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p> <p>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p> <p>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p>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p> <p>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국민연금가입자</p> <p>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p> <p>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p> <p>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p> <p>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p> <p>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p> <p>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p> <p>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p> <p>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 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p>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p> <p>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p> <p>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p>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p> <p>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p>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p> <p>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면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p> <p>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p> <p>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p>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p> <p>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인,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인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p> <p>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p> <p>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10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p> <p>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p> <p>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p> <p>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p> <p>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 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p> <p>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p> <p>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p>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p> <p>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p> <p>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p> <p>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p> <p>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p> <p>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p> <p>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p> <p>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p> <p>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p> <p>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p> <p>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p> <p>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3조(과오납금의 총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총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총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비 2. 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총당할 수 없다 <p>② 제1항에 따라 총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p>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총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p>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총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p>
<p>제100조(과오납금의 총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 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총당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총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p>	
<p>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면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p>	
<p>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p> <p>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p> <p>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p> <p>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p> <p>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p>	<p>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p> <p>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p> <p>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p> <p>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p> <p>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p> <p>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p> <p>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p> <p>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 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p> <p>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p> <p>⑥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p> <p>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p> <p>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제7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p> <p>⑤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p>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p> <p>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0조(재심사청구)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 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p> <p>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p> <p>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p>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p> <p>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 8 장 보 칙</p>	<p>제 8 장 보 칙</p>
<p>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p> <p>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p> <p>③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p> <p>④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p> <p>⑤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p>	<p>제110조(소득축소·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01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p>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p>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25조(소득추소·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추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추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④ 외국인 가입자들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p>⑤ 외국인 가입자들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p> <p>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제2항·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부록3

서식자료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상단의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사업장] 탭에서 사업장(가입자) 관련 모든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이용하시는 주요 서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금정보

다양하고 유익한 연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사업장

○ 서식자료

전체

사업장

개인

연금청구

사회보장합정

심사청구

기타

제목

검색

• 검색어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증명서 발급신청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서식개수선택 10개 ▶ 실행 ▶

번호	구분	제 목	작성 예시	다운 로드	팩스 전송	메일 전송	조회수
23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함)					527103
22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568728
21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452325
20	[사업장]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252141
19	[사업장]	당면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225622
18	[사업장]	당면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139776
17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279952
16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83883
15	[사업장]	사업장 탈퇴신고서					162441
14	[사업장]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60363

<< < 1 | 2 | 3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	-----	------	----------------------------

공 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이 본	사업장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공 고	사업장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이 본	사업장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본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공 고	전자고지 신청	합산자동이체 적용 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본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건강보험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고용보험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작성합니다)	1	2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고용보험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예술인 수		
고용보험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사업 명칭:) (사업 기간: -)	성립일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고용보험		주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산재보험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산재보험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영업제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직접 신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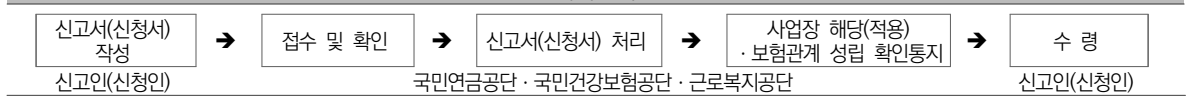
유의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간 사색을 제출하고 사색일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간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설정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은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노무재경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함)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재산(「자본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기 본근로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기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오만에 해당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이면 지원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제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2가-4가)이고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가)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산자영업제는 월별보험료(고용·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합니다)를 한산하여 출금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선면피해구제법」 「서면피해구제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의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합니다) 또는 건설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보험별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월별 보험료를 한산한 금액으로 발송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중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 보험료는 한산고지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로 각각의 고지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고용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회급(반환)계좌 사적신고"란에는 사업자 회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정리)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한산자영업제 적용 여부"란은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한산하여 출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에 "v" 표시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적용에 "v" 표시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이례회계연월은 납기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v"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접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디드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만기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사업장 특성부호"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사업장 특성부호를 적습니다.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회계종목"란에는 회계코드를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2쪽의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도 적습니다.
고 용 보 험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과 예술인이 종사하는 사업(장) 별로 작성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예술인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추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는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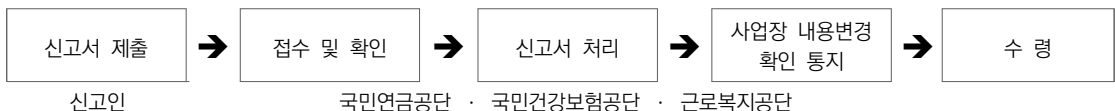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을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처리절차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지급 시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	----	----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폐업 []통폐합 []사업 종료 []그 밖의 사유		
	국민연금·건강보험 []휴업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도 해당)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유 발생일자(YYYY.MM.DD)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또는 예술인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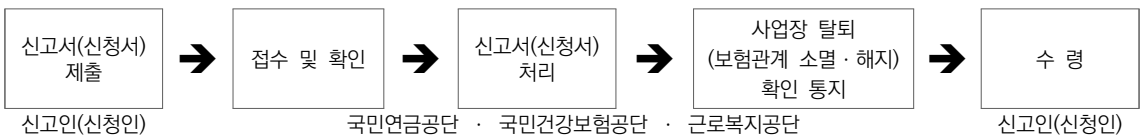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별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명칭	우편번호()	
전화번호	명칭	팩스번호	

구분	성명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직종	직책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파양자 신청)	[] 건강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p>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첨부 서류	<p>수수로 없음</p>
유의사항	
간강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홈페이지 M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합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망 전임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공통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외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보충로 남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남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간강보험	<p>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p>
고용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총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지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기목·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임(사업장 통·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기목·나목 및 같은 조 제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지역연금 부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발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1	0	0	x	x	0	0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산원법」 및 「아산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0	x	x	x	0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0	x	0	0	x	0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래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체류기간
		종별부호	등록인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래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래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래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법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장래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종별 부호)
 -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보전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종류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종류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 표시를 합니다.

297mm x 210mm [백상지(80g/㎡) 또는 종결지(80g/㎡)]

유의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지 다른 경우에는 상실 연월일만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인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 (국민연금)

YYYY. MM. DD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에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외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오용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의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 15. 16. 20. 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 "에 "v"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형관계 종료 4. 국제 상실(외국)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합정국 연금가입 19. 이만출국 24. 가입제외(외국의 병명) 25.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26.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58. 무부수대표자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급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1. 퇴직 2. 사망 4. 의료급여수급권자 10. 유급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13. 그 밖의 사유(외국인 당연 적용 제외 등) 16. 취득취소(천이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17. 국적상실 19. 이만출국 24. 가입제외(외국의 병명) 25.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26.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58. 무부수대표자

○ 근로자: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받고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득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변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득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㉞계와 ㉟계와 ㊱계외(근로소득의 합계. 다만, 비과세 소득 ㉞-10인근로수당과 ㉟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신입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라고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별 수를 적습니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와 구분코드를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명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영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하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종고용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후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신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고용보험 신재보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처리절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6. 28.>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사업장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변경 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 월	변경 사유	변경 월
							변경 사유
							변경 사유
							변경 사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신청(신고)인(사용자·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장지 80g/㎡〕 또는 중질지(백장지 80g/㎡)〕

제출(첨부) 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총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총사개월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교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감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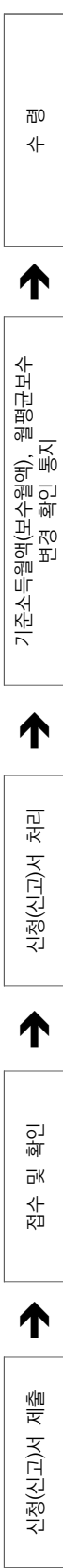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인 또는 포함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포함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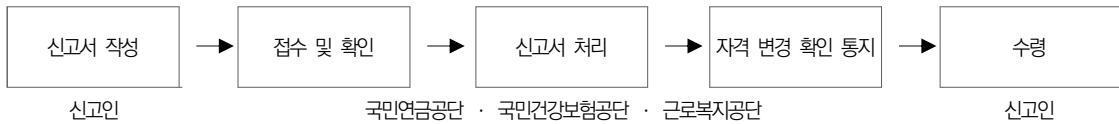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

[] 지역 가입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주택)	(회사)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희망여부	특수직종 부호
					[]희망 []미희망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가입자 확인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희망여부
								[]희망 []미희망	(인)
								[]희망 []미희망	(인)
								[]희망 []미희망	(인)
								[]희망 []미희망	(인)
								[]희망 []미희망	(인)

「국민연금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첨부서류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납부 재개신고서"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납부 재개 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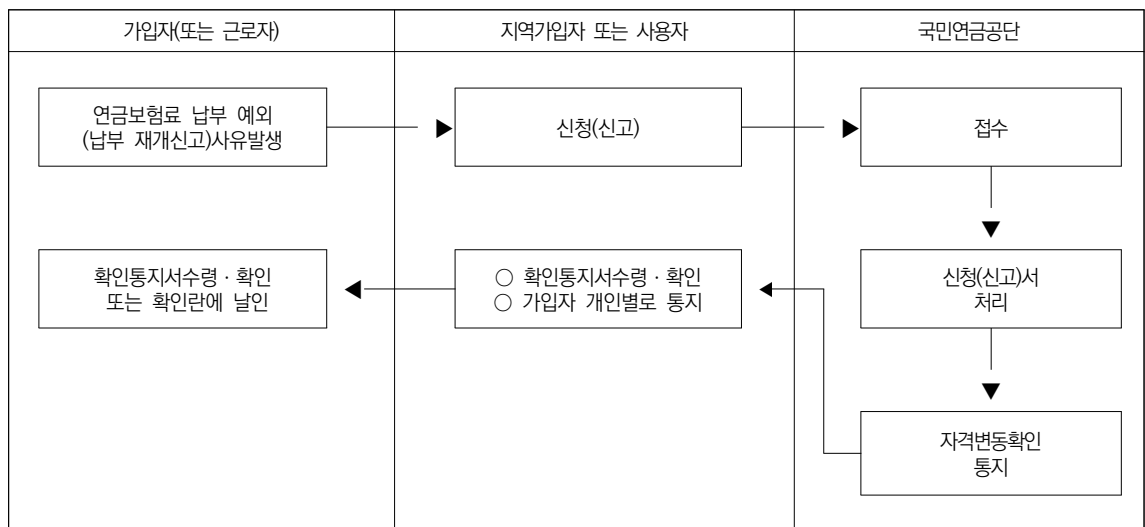
〈납부 예외 신청시 적어야 할 사항〉

3. "지역가입자 예외사유번호"란 또는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번호"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 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납부 재개 신고시 적어야 할 사항〉

5. "소득월액"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6.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7.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_____명, 고용보험 _____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_____명, 고용보험 _____명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여부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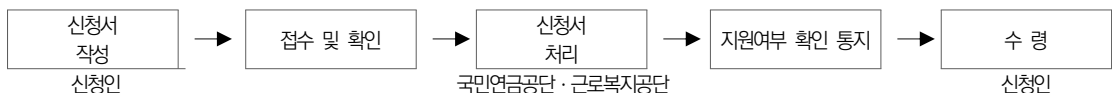
유의사항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같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입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가 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부록4

예상연금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70,000	33,300	164,580	245,360	326,13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2	380,000	34,200	165,090	246,120	327,14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	400,000	36,000	166,110	247,630	329,16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	500,000	45,000	171,200	255,230	339,260	423,280	500,000	500,000	500,000
5	600,000	54,000	176,290	262,820	349,350	435,880	522,400	600,000	600,000
6	700,000	63,000	181,390	270,420	359,440	448,470	537,500	626,520	700,000
7	800,000	72,000	186,480	278,010	369,540	461,060	552,590	644,120	735,650
8	900,000	81,000	191,580	285,600	379,630	473,660	567,680	661,710	755,740
9	1,000,000	90,000	196,670	293,200	389,720	486,250	582,780	679,310	775,830
10	1,100,000	99,000	201,760	300,790	399,820	498,840	597,870	696,900	795,930
11	1,200,000	108,000	206,860	308,380	409,910	511,440	612,970	714,490	816,020
12	1,300,000	117,000	211,950	315,980	420,010	524,030	628,060	732,090	836,110
13	1,400,000	126,000	217,040	323,570	430,100	536,630	643,150	749,680	856,210
14	1,500,000	135,000	222,140	331,170	440,190	549,220	658,250	767,270	876,300
15	1,600,000	144,000	227,230	338,760	450,290	561,810	673,340	784,870	896,400
16	1,700,000	153,000	232,330	346,350	460,380	574,410	688,430	802,460	916,490
17	1,800,000	162,000	237,420	353,950	470,470	587,000	703,530	820,060	936,580
18	1,900,000	171,000	242,510	361,540	480,570	599,590	718,620	837,650	956,680
19	2,000,000	180,000	247,610	369,130	490,660	612,190	733,720	855,240	976,770
20	2,100,000	189,000	252,700	376,730	500,760	624,780	748,810	872,840	996,860
21	2,200,000	198,000	257,790	384,320	510,850	637,380	763,900	890,430	1,016,960
22	2,300,000	207,000	262,890	391,920	520,940	649,970	779,000	908,020	1,037,050
23	2,400,000	216,000	267,980	399,510	531,040	662,560	794,090	925,620	1,057,150
24	2,500,000	225,000	273,080	407,100	541,130	675,160	809,180	943,210	1,077,240
25	2,600,000	234,000	278,170	414,700	551,220	687,750	824,280	960,810	1,097,330
26	2,700,000	243,000	283,260	422,290	561,320	700,340	839,370	978,400	1,117,430
27	2,800,000	252,000	288,360	429,880	571,410	712,940	854,470	995,990	1,137,520
28	2,900,000	261,000	293,450	437,480	581,510	725,530	869,560	1,013,590	1,157,610
29	3,000,000	270,000	298,540	445,070	591,600	738,130	884,650	1,031,180	1,177,710
30	3,100,000	279,000	303,640	452,670	601,690	750,720	899,750	1,048,770	1,197,800
31	3,200,000	288,000	308,730	460,260	611,790	763,310	914,840	1,066,370	1,217,900
32	3,300,000	297,000	313,830	467,850	621,880	775,910	929,930	1,083,960	1,237,990
33	3,400,000	306,000	318,920	475,450	631,970	788,500	945,030	1,101,560	1,258,080
34	3,500,000	315,000	324,010	483,040	642,070	801,090	960,120	1,119,150	1,278,180
35	3,600,000	324,000	329,110	490,630	652,160	813,690	975,220	1,136,740	1,298,270
36	3,700,000	333,000	334,200	498,230	662,260	826,280	990,310	1,154,340	1,318,360
37	3,800,000	342,000	339,290	505,820	672,350	838,880	1,005,400	1,171,930	1,338,460
38	3,900,000	351,000	344,390	513,420	682,440	851,470	1,020,500	1,189,520	1,358,550
39	4,000,000	360,000	349,480	521,010	692,540	864,060	1,035,590	1,207,120	1,378,650
40	4,100,000	369,000	354,580	528,600	702,630	876,660	1,050,680	1,224,710	1,398,740
41	4,200,000	378,000	359,670	536,200	712,720	889,250	1,065,780	1,242,310	1,418,830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2	4,300,000	387,000	364,760	543,790	722,820	901,840	1,080,870	1,259,900	1,438,930
43	4,400,000	396,000	369,860	551,380	732,910	914,440	1,095,970	1,277,490	1,459,020
44	4,500,000	405,000	374,950	558,980	743,010	927,030	1,111,060	1,295,090	1,479,110
45	4,600,000	414,000	380,040	566,570	753,100	939,630	1,126,150	1,312,680	1,499,210
46	4,700,000	423,000	385,140	574,170	763,190	952,220	1,141,250	1,330,270	1,519,300
47	4,800,000	432,000	390,230	581,760	773,290	964,810	1,156,340	1,347,870	1,539,400
48	4,860,000	441,000	395,330	589,350	783,380	977,410	1,171,430	1,365,460	1,559,490
49	5,000,000	450,000	400,420	596,950	793,470	990,000	1,186,530	1,383,060	1,579,580
50	5,500,000	495,000	425,890	634,920	843,940	1,052,970	1,262,000	1,471,020	1,680,050
51	5,900,000	531,000	446,260	665,290	884,320	1,103,340	1,322,370	1,541,400	1,760,430

- 연금액산정 : $\{1.275*(A+B)*P18/P+...+1.2*(A+B)*P23/P\}(1+0.05n/12) \times$ 지급률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8~P23":연도별 가입월수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2023년 비례상수 1.275(소득대체율 42.5%)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편입금예상월액표 (단위:월/원)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순번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9%)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 (장애4급)
1	350,000	31,500	341,170	272,940	204,700	9,211,810
2	400,000	36,000	346,490	277,190	207,890	9,355,250
3	500,000	45,000	357,110	285,690	214,260	9,642,120
4	600,000	54,000	367,740	294,190	220,640	9,929,000
5	700,000	63,000	378,360	302,690	227,010	10,215,870
6	800,000	72,000	388,990	311,190	233,390	10,502,750
7	900,000	81,000	399,610	319,690	239,760	10,789,620
8	1,000,000	90,000	410,240	328,190	246,140	11,076,500
9	1,100,000	99,000	420,860	336,690	252,510	11,363,370
10	1,200,000	108,000	431,490	345,190	258,890	11,650,250
11	1,300,000	117,000	442,110	353,690	265,260	11,937,120
12	1,400,000	126,000	452,740	362,190	271,640	12,224,000
13	1,500,000	135,000	463,360	370,690	278,010	12,510,870
14	1,600,000	144,000	473,990	379,190	284,390	12,797,750
15	1,700,000	153,000	484,610	387,690	290,760	13,084,620
16	1,800,000	162,000	495,240	396,190	297,140	13,371,500
17	1,900,000	171,000	505,860	404,690	303,510	13,658,370
18	2,000,000	180,000	516,490	413,190	309,890	13,945,250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순번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9%)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 (장애4급)
19	2,100,000	189,000	527,110	421,690	316,260	14,232,120
20	2,200,000	198,000	537,740	430,190	322,640	14,519,000
21	2,300,000	207,000	548,360	438,690	329,010	14,805,870
22	2,400,000	216,000	558,990	447,190	335,390	15,092,750
23	2,500,000	225,000	569,610	455,690	341,760	15,379,620
24	2,600,000	234,000	580,240	464,190	348,140	15,666,500
25	2,700,000	243,000	590,860	472,690	354,510	15,953,370
26	2,800,000	252,000	601,490	481,190	360,890	16,240,250
27	2,900,000	261,000	612,110	489,690	367,260	16,527,120
28	3,000,000	270,000	622,740	498,190	373,640	16,814,000
29	3,100,000	279,000	633,360	506,690	380,010	17,100,870
30	3,200,000	288,000	643,990	515,190	386,390	17,387,750
31	3,300,000	297,000	654,610	523,690	392,760	17,674,620
32	3,400,000	306,000	665,240	532,190	399,140	17,961,500
33	3,500,000	315,000	675,860	540,690	405,510	18,248,370
34	3,600,000	324,000	686,490	549,190	411,890	18,535,250
35	3,700,000	333,000	697,110	557,690	418,260	18,822,120
36	3,800,000	342,000	707,740	566,190	424,640	19,109,000
37	3,900,000	351,000	718,360	574,690	431,010	19,395,870
38	4,000,000	360,000	728,990	583,190	437,390	19,682,750
39	4,100,000	369,000	739,610	591,690	443,760	19,969,620
40	4,200,000	378,000	750,240	600,190	450,140	20,256,500
41	4,300,000	387,000	760,860	608,690	456,510	20,543,370
42	4,400,000	396,000	771,490	617,190	462,890	20,830,250
43	4,500,000	405,000	782,110	625,690	469,260	21,117,120
44	4,600,000	414,000	792,740	634,190	475,640	21,404,000
45	4,700,000	423,000	803,360	642,690	482,010	21,690,870
46	4,800,000	432,000	813,990	651,190	488,390	21,977,750
47	4,900,000	441,000	824,610	659,690	494,760	22,264,620
48	5,000,000	450,000	835,240	668,190	501,140	22,551,500
49	5,100,000	459,000	845,860	676,690	507,510	22,838,370
50	5,500,000	495,000	888,360	710,690	533,010	23,985,870
51	5,900,000	531,000	930,860	744,690	558,510	25,133,370

- 연금액산정 : $1.275(A+B)(1+0.05n/12) \times$ 지급률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2023년 비례상수 1.275(소득대체율 42.5%)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예상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유족연금예상월액표 (단위:월/원)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순번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50,000	31,500	136,470	190,690	246,760
2	400,000	36,000	138,590	194,430	251,970
3	500,000	45,000	142,840	201,910	262,390
4	600,000	54,000	147,090	209,390	272,810
5	700,000	63,000	151,340	216,870	283,230
6	800,000	72,000	155,590	224,350	293,650
7	900,000	81,000	159,840	231,830	304,070
8	1,000,000	90,000	164,090	239,310	314,490
9	1,100,000	99,000	168,340	246,790	324,910
10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11	1,300,000	117,000	176,840	261,750	345,760
12	1,400,000	126,000	181,090	269,230	356,180
13	1,500,000	135,000	185,340	276,710	366,600
14	1,600,000	144,000	189,590	284,190	377,020
15	1,700,000	153,000	193,840	291,670	387,440
16	1,800,000	162,000	198,090	299,150	397,860
17	1,900,000	171,000	202,340	306,630	408,280
18	2,000,000	180,000	206,590	314,110	418,700
19	2,100,000	189,000	210,840	321,590	429,120
20	2,200,000	198,000	215,090	329,070	439,540
21	2,300,000	207,000	219,340	336,550	449,960
22	2,400,000	216,000	223,590	344,030	460,390
23	2,500,000	225,000	227,840	351,510	470,810
24	2,600,000	234,000	232,090	358,990	481,230
25	2,700,000	243,000	236,340	366,470	491,650
26	2,800,000	252,000	240,590	373,950	502,070
27	2,900,000	261,000	244,840	381,430	512,490
28	3,000,000	270,000	249,090	388,910	522,910
29	3,100,000	279,000	253,340	396,390	533,330
30	3,200,000	288,000	257,590	403,870	543,750
31	3,300,000	297,000	261,840	411,350	554,170
32	3,400,000	306,000	266,090	418,830	564,590
33	3,500,000	315,000	270,340	426,310	575,010
34	3,600,000	324,000	274,590	433,790	585,440
35	3,700,000	333,000	278,840	441,270	595,860
36	3,800,000	342,000	283,090	448,750	606,280
37	3,900,000	351,000	287,340	456,230	616,700
38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39	4,100,000	369,000	295,840	471,190	637,540
40	4,200,000	378,000	300,090	478,670	647,960
41	4,300,000	387,000	304,340	486,150	658,380
42	4,400,000	396,000	308,590	493,630	668,800
43	4,500,000	405,000	312,840	501,110	679,220
44	4,600,000	414,000	317,090	508,590	689,640
45	4,700,000	423,000	321,340	516,070	700,060
46	4,800,000	432,000	325,590	523,550	710,490
47	4,900,000	441,000	329,840	531,030	720,910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순번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48	5,000,000	450,000	334,090	538,510	731,330
49	5,100,000	459,000	338,340	545,990	741,750
50	5,500,000	495,000	355,340	575,910	783,430
51	5,900,000	531,000	372,340	605,830	82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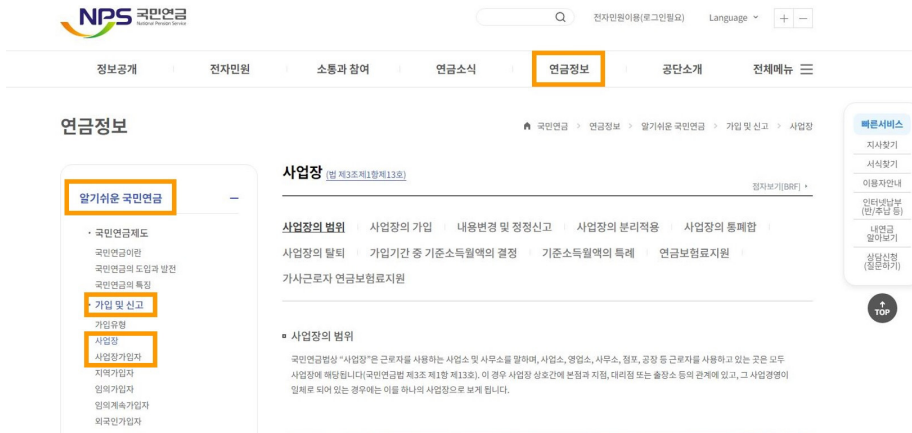
-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 \times$ 지급률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2~P23":연도별 가입월수
 * 유족연금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3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9년 1월-2023년 12월(15년), 20년은 2004년 1월-2023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3.7.1. 이후부터 5,59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부록5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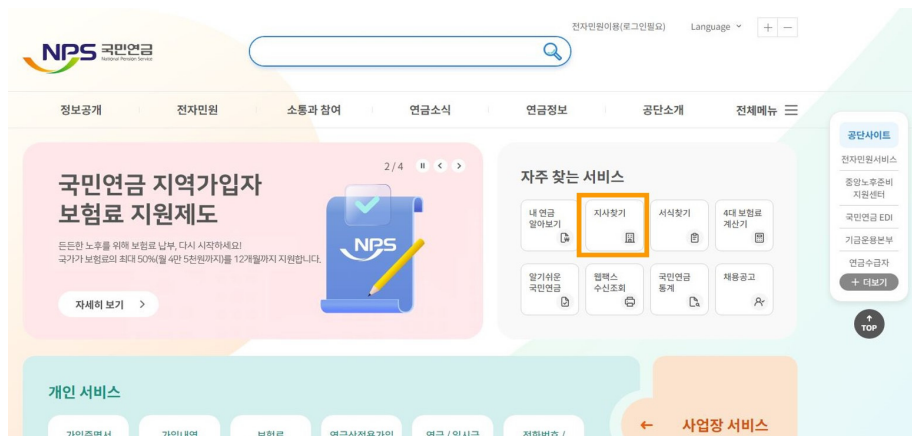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제도 안내



→ 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가입 및 신고]-[사업장/사업장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 관련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사 찾기' 안내

→ 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지사찾기] 또는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지사/직원찾기] -[지사찾기]에서 해당 지사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6

지사 주소 및 전화 - 팩스번호



- 향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월 기준)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1	종로중구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충무로 3가)	02-397-9524	02-3485-2700~7
2	동대문중앙	025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북빌딩 6층(신설동)	02-920-0511	02-3485-2710~3
3	성북강북	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6층,7층(번동)	02-901-2805	02-3485-2720~4
4	도봉노원	014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 10층	02-2211-2804	02-3485-2730~2
5	성동광진	049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 3층(광장동)	02-3408-6703	02-3485-2741~3, 2745~9
6	송파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02-3433-5813	02-3485-2750~9
7	강동하남	0538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성내동)	02-480-8873	02-3485-2760~5
8	서울남부지역본부	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2층(논현동)	02-3416-6010~1	02-3485-2770~9
9	서초	06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양재동)	02-3415-0302	02-3485-2703
10	관악	08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인현동)	02-6934-2002	02-3485-2790~9
11	서울북부지역본부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13층(충정로 3가)	02-2176-9902	02-3485-2840 ~2849
12	구로금천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503	02-3485-2800~3, 2808, 2877, 2896
13	영등포	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7층(KT 여의도타워)	02-2629-2304	02-3485-2810,2812~3,2816~8
14	강서	07791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층	02-2086-7133	02-3485-2820
15	은평	0335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42, 3층(불광동)	02-350-5504	02-3485-2830~3, 2836,2839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16	양천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신정동,해누리타운)	02-6345-9002,9 031,9061	02-3485-2857
17	용산	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4층(한강로 2가 191)	02-6220-2203	02-3485-2871
18	강남역삼	06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역삼동,카이트타워)	02-2186-4007	02-3485-2882~3, 3485-2886~7
19	동작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랑진로 100(노랑진동), CTS 기독교 TV 멀티미디어 센터 8층	02-6935-8403	02-3485-2910
20	부산지역본부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091~3	051-910-8050
21	중부산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7, 3층 (중앙동 4가, 교보생명빌딩)	051-660-3211	051-910-8100~3
22	서부산	493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하단동)	051-290-3515	051-910-8080
23	북부산	46548	부산광역시 북구 기차로 12, 4층(덕천동)	051-603-1103	051-910-8060~6
24	동래금정	4787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2 (수안동 192-3)	051-550-7561	051-910-8021
25	남부산	4826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수영사옥 1,2층	051-793-1091	051-910-8000
26	동부산	480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13	051-910-8141
27	기장상담센터	4606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읍내로 92, 2층	051-722-6955	051-910-8009
28	부산사상	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 (괘법동),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2층	051-792-5311	051-910-8060~4
29	대구지역본부	42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2층	053-589-4510-11	053-288-7040
30	서대구	41593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 (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 2 본점)	053-380-3011~2	053-288-7080
31	동대구	41142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 5층 (입석동, 동대구우체국)	053-430-7813	053-288-7066
32	대구수성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 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93~4	053-288-7000
33	대구달성고령	42955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3, 5~6층	053-470-1511~2	053-288-7020
34	남동연수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032-451-0753	032-211-7061~4
35	서인천	22711	인천광역시 서구서곶로 284, 3층(심곡동)	032-560-0502	032-211-7040~3, 211-7046
36	부평계양	2138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부평동)	032-500-8103	032-211-7021~7023, 211-7025~7026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37	남인천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3,4 층	032-770-3503	032-211-7002~3
38	중구상담센터	22313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8(사동 3-1) 경신빌딩 1 층	032-773-7561~3	032-211-7008
39	김포강화	10099	경기도 김포시 결포 2 로 21, 파인스타 2 4 층	031-8048-1303	031-031-303-2340
40	광주지역본부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3 층	062-958-2029, 2003	062-455-3003
41	동광주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8 층(금남로 5 가)	062-230-0761	062-455-3023
42	북광주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 층	062-520-8134	062-455-3040
43	논산상담센터	32974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22, 6 층(취암동)	041-733-8773-4	041-388-2008
44	동대전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4 층(선화동)	042-720-4011	042-388-2022
45	북대전	3437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042-670-1091	042-388-2042
46	대전세종지역본부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1,4,5 층	044-715-1600	044-044-715-1001
47	서대전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 층(탄방동)	042-480-4982	042-042-388-2001
48	남울산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 층(신정동)	052-226-2141	052-930-7023
49	울주상담센터	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B1 206 호(울산전시컨벤션센터)	052-254-1760~2	052-052-254-1763
50	동울산	44510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5 층 (반구동)	052-290-6114	052-930-7003
51	경인지역본부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 번길 19, 3 층, 4 층, 9 층(인계동)	031-229-4171	031-303-2080~3, 303-2086~7
52	안양과천	14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 층(호계동)	031-420-2002~3	031-303-2143
53	분당지사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 층 (야탑동)	031-778-0302~3	031-303-2060
54	이천여주	173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 층(하나빌딩)	031-630-7903	031-303-2200 ~2203,2206
55	여주상담센터	12628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1, 4 층(동부빌딩)	031-886-8171~3	031-303-2218
56	평택안성	17909	경기도 평택시 평택 2 로 34, 2 층, 5 층(평택동)	031-659-0802 ~0803	031-303-2240 ~2246
57	안성상담센터	1758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11 번길 8, 6 층	031-671-6917~9	031-671-6920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58	안산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고잔동), 2 층	031-481-7703~4	031-303-2120
59	안산외국인상담센터	15352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NH 농협은행 3 층	031-365-3082	031-031-303-2135
60	광명	14235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3 층(철산동)	02-2610-2831	02-3485-2850~5
61	부천	1458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2 층(중 1 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02	032-211-7083
62	고양일산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 층(마두동)	031-920-5402	031-303-2000
63	의정부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 2 층(의정부동)	031-828-3701	031-303-2182 ~2183
64	동두천상담센터	11329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0, 1 층	031-868-9540~2	031-031-303 -2188
65	구리양평	11924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14 층(교문동)	031-550-5802	031-303-2031,4
66	양평상담센터	1255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77, 1 층	031-775-5703~4	031-303-2039
67	용인	170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 번길 9-21(역북동 748)	031-288-1303	031-303-2160~3
68	화성오산	18413	경기도 화성시 병점 2 로 6, 금강빌딩 5 층 (병점동)	031-229-6002~3	031-303-2264
69	봉담상담센터	1831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68, 4 층(황현빌딩)	031-354-4663, 4665~6	031-303-2268
70	시흥	15036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5 층(정왕동, 한국산업은행)	031-488-2711	031-303-2100
71	군포의왕	15818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404,3 층 (산본동, 대주빌딩)	031-390-8001	031-303-2040~6
72	파주	10915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금촌동), 3 층	031-956-3636	031-303-2226
73	포천철원	1117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5 층	031-540-8012	031-303-2284
74	경기광주	1273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 층 (송정동)	031-8026-3031	031-798-4021
75	북수원	1627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 번길 30, KT 수원빌딩 별관 2 층(영화동)	031-8007-2203	031-303-2321, 2325,2324
76	고양덕양	105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 4 로 7, 5 층(원흥동, 고양동부새마을금고)	031-927-3251	031-303-2361~4
77	남양주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6 번길 21-6, 3-4 층(트윈타워빌딩 A 동)	031-523-6390	031-303-2023
78	수정중원	133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 3 층(신흥역시네마타워)	031-5178-2110	031-303-2090~7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79	수지	1684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 2 로 51, 데이파크 A 동 3 층	031-8019-9040	031-303-2170
80	강릉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 번길 12(포남동)	033-640-9303	033-249-8103
81	속초상담센터	24872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24(조양동) , 505 호	033-637-8121	033-249-8119
82	춘천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5 층, 6 층 (퇴계동)	033-259-7721	033-249-8163
83	가평상담센터	1241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04-1 해성당 2 층	031-8078-7101~3	031-031-8078-7109
84	원주	2638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2(무실동)	033-749-8403	033-249-8140
85	영월상담센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8, 3 층	033-372-8452-3	033-249-8148
86	삼척	25911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교동)	033-571-2128	033-249-8123
87	태백상담센터	26015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97(황지동), 1 층	033-552-6471~2	033-249-8139
88	홍천	2513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 층 (신장대리)	033-439-5416	033-249-8180
89	횡성상담센터	2523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402,3 층	033-345-7791~2	033-345-7793
90	동청주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 번길 20, 4 층(서문동)	043-251-5100	043-901-5000 ~5009
91	충주	27341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금릉동)	043-840-0784	043-901-5043
92	제천종합센터	27169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65, 4 층(의림동)	043-652-9370~2	043-901-5059
93	옥천	2904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 층	043-730-2711	043-730-2740~4
94	서청주	283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27(비하동) 덕원회관 2 층	043-710-8510	043-901-5100~1
95	천안	3119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 6 로 60 (청당동)	041-550-8919	041-901-5040
96	홍성	3224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3 층(옥암리, 대왕빌딩)	041-630-8111~2	041-901-5060
97	당진상담센터	31774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1 로 33 (수청동 1008) 상아빌딩 4 층	041-430-8801 ~03	041-901-5068
98	보령	33430	충청남도 보령시 동천로 27	041-930-6602	041-901-5028
99	서천상담센터	3364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안길 1 (사곡리, KT 서천빌딩)	041-951-9581	041-901-5029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100	공주부여	3257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 2 길 27-5 (신관동)	041-850-3801	041-901-5006, 5002,5009
101	부여상담센터	33153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55, 1 층	041-833-3870~1	041-901-5008
102	서산태안	31989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 3 로 60 (예천동 1256-3), 동일타워 5 층	041-419-3011~3	041-901-5081
103	아산	3148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 번길 9-4, 6 층	041-420-2315	041-901-5100~4
104	전주완주	5494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3 층 (서신동)	063-270-5313	063-900-3040
105	익산군산	546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2 길 42(주현동)	063-850-0381	063-900-3020
106	군산종합센터	5413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31, 3 층 (나운동)	063-464-5376	063-900-3028
107	정읍	561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97(상동)	063-530-5812	063-900-3060
108	김제상담센터	5439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198, 1 층 (요촌동)	063-544-5817~9	063-544-5820
109	남원순창	5574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의총로 116(동충동)	063-620-3412	063-900-3000
110	진안	5542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진안사옥	063-430-3502	063-900-3080, 3081
111	목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 층(호남동)	061-240-3311	061-900-7002
112	해남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해리)	061-530-2303	061-900-7060
113	완도상담센터	5912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 3 번길 24-1(KT 완도지사 2 층)	061-555-1083~5	061-900-7068
114	순천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061-729-3002~4	061-900-7020
115	광양상담센터	57784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 KT 광양지점 1 층(중동)	061-817-2001~3	061-900-7030
116	여수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 2 길 24 (공화동)	061-660-5531	061-900-7045 ~7047
117	나주	5826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21, KT 나주빌딩 별관(송월동)	061-820-0008	061-900-7081
118	경주영천	38146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4 층 (성동동)	054-770-3922	054-613-5000
119	영천상담센터	38891	경상북도 영천시 금원로 63, 영천상공회의소 2 층(완산동)	054-333-7455~7	054-613-5008
120	포항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 층(대도동)	054-280-0801~5	054-613-5101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121	울진상담센터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 8 길 25, 3층(읍내리)	054-782-2383	054-613-5108
122	울릉상담센터	4022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93, 2층	054-791-9660	054-613-5110
123	안동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옥동)	054-850-9010~1	054-613-5060
124	문경	36978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45(모전동)	054-550-3301~2	054-613-5040
125	상주상담센터	37179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147, 2층(서성동)	054-533-7193	054-613-5044
126	구미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30, 8503~4	054-613-5020
127	영주봉화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2~4(영주동)	054-639-8021, 8012	054-613-5080~1
128	김천성주	39545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층(산음동)	054-420-1616	054-613-5123
129	경산청도	38677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54, 6층(사정동)	053-722-5010~5012	053-288-7121
130	청도상담센터	38344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54, 청도빌딩 6층	054-516-700~2	054-288-7130
131	창원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 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02	055-600-8301~4
132	진해상담센터	5167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42 석동 H 빌딩 406호	055-716-9891~2	055-600-8010
133	김해밀양	5092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313	055-600-8220
134	밀양상담센터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13, 4층(내이동)	055-356-3801~3	055-600-8228
135	김해외국인상담센터	5092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3층(부원동, 김해부원동우체국)	055-320-8400	055-600-8224
136	통영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 3 길 16	055-650-8503	055-600-8320
137	거제종합센터	53253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6 길 1, 4층	055-638-5093	055-600-8329
138	진주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439-5)	055-760-0630	055-600-8280
139	마산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055-290-4522	055-600-8241~6
140	거창	50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 3 길 56	055-940-4510~2	055-600-8201
141	양산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양산사옥 1층, 3층	055-371-1562	055-600-8260

순번	지사(센터)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142	사천남해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 (송지리 1265)	055-830-0815	055-600-8340
143	제주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 길 11-1 (도남동)	064-720-4110	064-720-5700~3, 5706,5708
144	서귀포	635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동홍동), 축산농협 5 층	064-800-4516	064-720,5721~4
145	장애심사센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 다길 13	02-2175-2701~7	02-3485-9842
146	국제협력센터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 층	063-713-7101	063-900-3803
147	인천공항상담센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 1 여객터미널 1 층 1~2 번 출구사이	032-743-5005,6	032-3485-9806

번거로운 국민연금 과오납금 업무처리



적기신고로 예방하세요!

★ 적기신고는 매월 15일까지! ★

※ 과오납금이란?

퇴사, 휴직 등 자격변동 사항을 지연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에 이과장님 퇴사 신고를 늦게 해서 더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환급 받으려고 하니 번거롭더라고요...!

이번 달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고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제 근무 인원과 달랐어요!



**사업장 가입자의 변동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
퇴사·휴직 등 사업장 근무 인원에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기에 신고해주세요~**

‘적기신고’란?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동사항 발생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15일까지 신고 내용으로 당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단, 매월 1일 변동은 해당월의 15일까지 신고해주세요!



예시로 함께 알아보까요?

2월 16일 퇴사자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적기 신고하면? VS 8월 14일 지연 신고하면?



과오납금 발생


✓ 3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2월분까지 납부)

✓ 8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8월 14일에 지연 신고 할 경우,
8월분 고지서부터 퇴사자의 보험료가 제외되고
퇴사자의 3월~7월 보험료가 과오납금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 보험료에 충당되구요!



이후 남은 과오납금을 반환 받는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1


**과오납금은 미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미납된 보험료에 먼저 충당처리 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납부기한이 빠른 달의 미납보험료부터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2



미납 보험료 충당 후, 남은 과오납금은..?

- ✓ **다음달 보험료에 충당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주세요!**
국민연금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관할 지사로 전화 신청 가능
- ✓ **남은 과오납금 반환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콜센터(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전화 신청,
통합정수포털사이트(si4n.nhis.or.kr)로 반환 신청

정산 신청 없는 간편한 업무처리를 원한다면

매월 15일!
적기 신고
기억해주세요!



2024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발행일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인 김태현
편집인 김정학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디자인·인쇄 마이문화당 063-232-1003